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허가 신청요령

2021. 10.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목표	 1
II.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 개요	 1
III.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	 3
IV. 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17
[붙임1] 신청서류 작성양식 ①	 21
[붙임2] 신청서류 작성양식 ②	 81

I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목표

-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서 경기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 안정적 방송 운영을 통해 지역밀착형 콘텐츠 지속 제작·보급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준수 등 지상파라디오방송의 역할과 책무 제고

II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허가 개요

가. 허가대상 방송사업

-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방송법 제9조제1항)
- 방송국 및 방송보조국 당 허가신청

나. 허가대상 방송사업자 수

- 1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다. 허가대상 방송구역 및 주파수

- 방송구역 : 경기도, 인천광역시(계양구, 강화, 옹진군 제외)

※ 구체적인 방송구역은 방송국 및 방송보조국 위치, 주파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주파수 : 방송국 99.9MHz,
방송보조국 95.5MHz 및 100.7MHz

라. 방송사항

- 방송사항 전반

마. 신청 요건

-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의 경우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 자본의 출자 및 출연)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바. 허가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2021.11.12.(금) 18:00까지
- 접수서류 : 방송국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 접 수 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문의 :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24, 1425, tvradio2@korea.kr)
방통위 홈페이지 경기지역 라디오 신규허가 문의 게시판
- 기술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044-202-4933, 49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2-2680-1734)

사. 유의 사항

-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 보충서류 등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1

심사 기본계획

1. 심사 기본방향

-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경기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안정적 방송 운영을 통한 지역밀착형 콘텐츠 지속 제작·보급,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준수 등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목표를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
- 신청 사업자 간 비교심사 평가(RFP심사) 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심사 준비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 신청 사업자의 서류 접수 및 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서류를 징구
 - 신청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중 서류검토만으로 평가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 관계기관 의견조회
- 홈페이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자의 의견을 청취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 구성 방향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11인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구 분	분 야(인원)	비 고
심사위원 (11)	심사위원장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 (2)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2)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 구성을 위해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음

3) 심사위원회 위촉기준

-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등

4) 심사위원 결격사유

- 2018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 사업자 또는 지분 5% 이상 주요주주 또는 출자단체 등의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 2018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 사업자 또는 지분 5% 이상 주요주주 또는 출자단체 등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 사업자 또는 지분 5% 이상 주요주주 또는 출자단체 등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 일정 기간을 정하여 법률·정책·경영·회계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계약
-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 사업자 또는 지분 5% 이상 주요주주 또는 출자단체 등인 일간신문사·뉴스통신사·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 사업자의 허가신청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 2018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나. 심사위원회 운영

1) 기본방향

-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 사업자의 허가신청 서류 검토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선정 여부, 선정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2)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세부심사평가지침(안) 및 세부사항 의결
- 심사항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 신청 사업자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

3) 의견청취

- (청취내용) 신청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석대상) 신청 사업자 대표자 등
 - ※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 또는 심사위원회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4) 심사평가 방안

- (평가원칙) 허가신청서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 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평가
- (평가방식)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계량 평가 :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 반영
 - 비계량 평가 :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각 등급별로 평점을 환산하여 부여(항목별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적정/부적정 여부만 평가하는 경우 적정은 해당 항목 배점의 최고점수, 부적정은 최저점수 부여

< 비계량 평가 환산점수 기준 >

구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100%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80%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60%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40%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20%

- (점수 산정) 세부 심사항목별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평균을 집계한 최종 심사평가점수를 소수점 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자리까지 산정 하고 이 합계를 신청 사업자의 최종 평가점수로 함
- 비계량항목 심사 평가점수 집계 시 세부 심사항목별 최고점수 및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심사점수를 제외하되,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1인의 심사점수만 제외

2

심사기준 구성 및 배점

1. 심사사항 구성

-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은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토대로 7개 사항으로 구성

2. 심사사항별 배점

- 정책목표에 따라 주요 심사사항에 대한 배점 비중을 강화하고, 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신규 선정임을 감안하여 기타 심사사항별 배점
 - 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안정적 방송 운영,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등을 위해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②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④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배점을 가장 높게 설정
-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심사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심사사항별 배점 >

심사사항	배 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0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200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및 타당성	150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00
5. 재정적 능력	100
6. 기술적 능력	100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50
합 계	1,000

3. 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안)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	1-1-1.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계획의 적정성(30) 1-1-2.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30) 1-1-3. 방송의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20)	80 (비계량)	200
	1-2. 청취자 권익 실현 방안	1-2-1. 청취자 권익 보호 방안의 적정성(20) 1-2-2. 청취자 참여 방안의 적정성(20) 1-2-3. 청취자 불만 처리계획의 적정성(20)	60 (비계량)	
	1-3. 신청법인의 적정성	1-3-1.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적정성(30) 1-3-2.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30)	60 (비계량)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2-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적정성	2-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우수성(40) 2-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차별성 및 독창성(40) 2-1-3. 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독립성 및 자율성(40)	120 (비계량)	200
	2-2. 방송프로그램 제작·수급계획의 적정성	2-2-1.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50) 2-2-2.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타당성(30)	80 (비계량)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3-1-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50)	50 (비계량)	150
	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3-2-1. 지역적·사회적 기여실적 및 기여계획(25) 3-2-2. 지역문화 창달에 대한 기여실적 및 기여계획(25)	50 (비계량)	
	3-3. 콘텐츠의 지역성 구현 방안	3-3-1.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계획(25) 3-3-2. 지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계획(25)	50 (비계량)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1.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	4-1-1.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20) 4-1-2. 라디오방송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계획의 적정성(15) 4-1-3. 추정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25)	60 (비계량)	200
	4-2. 인력·조직 운영 계획의 적정성	4-2-1.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20) 4-2-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20)	40 (비계량)	
	4-3.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4-3-1. 경영의 효율성 확보 방안(20) 4-3-2.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20)	40 (비계량)	
	4-4. 자금 조달 및 운영 계획	4-4-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30) 4-4-2.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30)	60 (비계량)	
5. 재정적 능력	5-1.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무적 우수성	5-1-1.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무적 우수성(50)	50 (비계량)	100
	5-2.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자금출자 능력	5-2-1.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자금출자 능력(50)	50 (비계량)	
6. 기술적 능력	6-1. 방송시설 구축 계획의 적정성	6-1-1. 방송제작·송출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40)	40 (비계량)	100
	6-2. 방송시설 운영 계획의 적정성	6-2-1. 방송제작·송출시설 운용계획의 적정성(20) 6-2-2. 방송제작·송출시설 투자계획의 적정성(20)	40 (비계량)	
	6-3. 난청 및 혼신 해소 계획	6-3-1. 난청 및 혼신해소 계획의 적정성(20)	20 (비계량)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1. 방송발전 기여 계획	7-1-1. 방송발전 기여 계획의 우수성(30)	30 (비계량)	50
	7-2. 방송통신발전 기금 출연계획의 우수성	7-2-1.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 계획의 우수성(20)	20 (계량)	
계	-		1,000	

4. 중점 심사항목 선정

-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3개의 범주를 마련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범주별 1개 선정

< 중점 심사항목 관련 3개 범주 >

정책목표	범주	심사항목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서 경기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 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안정적 방송 운영을 통해 지역밀착형 콘텐츠 지속 제작·보급	⇒ 안정적 방송 운영	⇒ 4-4. 자금 조달 및 운영 계획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공익성 준수 등 지상파라디오 방송의 역할과 책무 제고	⇒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준수	⇒ 1-1.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

3 심사 관련 주요 사항

1. 주요주주 등 관련 사항

- (주요주주의 범위) 주식회사 등의 경우 5% 이상 보유한 주주 등은 주요주주에 해당하되,
 -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의 지분율 합이 51% 미만인 경우 지분 1% 이상 5% 미만을 보유한 주주 중 지분을 많이 보유한 주주 순으로 합계 51%까지인 주주까지 해당
- ※ 주요주주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경우 단체 자체를 평가하되, 주요주주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 해당 단체의 출자자 전원을 평가
- (주요주주 평가 항목) 신청법인의 적정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재무적 우수성, 자금출자 능력 등
- 신청인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경우 신청인 자체를 평가하되, 출자자 등이 있는 경우 주요주주의 범위에 준하여 출자자를 평가

2. 최초 납입자본금 관련 사항

가. 인정 범위

- (설립예정법인) 허가증 교부 직전까지 출자 예정인 금액으로, 자본금(법정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합한 금액
 -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경우 방송 운영을 위한 초기 출자 예정 금액 또는 출연 예정 금액(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재원*) 등
- * 허가받은 날로부터 방송 개시 후 1년간 초기 시설투자 및 운영, 프로그램 제작, 방송국 운영 등을 위한 비용 등
- (기존법인) 자산 중 신규 방송사업을 위한 투자 금액 및 허가증 교부 직전까지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주식발행초과금 포함)의 합계
 -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경우 방송 운영을 위한 출자금 또는 출연금(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재원*)
- * 허가받은 날로부터 방송 개시 후 1년간 초기 시설투자 및 운영, 프로그램 제작, 방송국 운영 등을 위한 비용 등

나. 평가 요소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구성주주의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포함) 등
 - 기존법인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주주의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신규 방송사업을 위한 투자금액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경우 방송 운영을 위한 출연금 또는 출자금(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재원) 교부 등 관련 의사결정기구 등의 결의서

3. 출연금 관련 사항

- 최소 출연금 규모는 납입자본금의 5%를 하한선으로 설정하며, 5%부터 비율에 따라 차등 배점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신청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사업자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및 심사항목 중 중점 심사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 1-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 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4-4. 자금 조달 및 운영 계획
- 최고득점자가 2개 사업자 이상인 경우 심사항목 중 중점 심사항목의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신규사업자로 선정
- 허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
-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사업자가 없거나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심사사항 및 중점 심사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모할 수 있음
- 신규사업자 선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단축 가능

※ 「전파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의2. 방송국: 5년

④ … (전략)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중략) …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200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1-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80)	1-1-1.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계획의 적정성(30)	· 방송사업 목표 및 비전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방송법 제5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1-2.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30)	· 시사·보도 및 선거 관련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 방안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방송법 제6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정성 실현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1-3. 방송의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20)	· 재난방송 편성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방송법 제6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익성 실현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2. 청취자 권익 실현 방안(60)	1-2-1. 청취자 권익 보호 방안의 적정성(20)	· 청취자 권익실현 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소수 계층의 방송접근성 보장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2-2. 청취자 참여 방안의 적정성(20)	·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방송법 제87조)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계획의 적정성(방송법 제89조)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과정의 청취자 참여기회 보장방안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1-2-3. 청취자 불만 처리계획의 적정성(20)	· 자체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자체심의 절차의 효율성 · 청취자 민원처리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관련 절차의 효율성 및 체계성
1-3. 신청법인의 적정성(60)	1-3-1.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적정성(30)	· 주주구성의 다양성, 주요주주의 정책 목표 실현 의지 및 역량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사업목적, 사업운영 투명성, 자원구조와 자원형성 과정 등 방송사업 참여 적합성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공익 및 자선 사업 참여 실적
	1-3-2.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30)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관련(방송, 통신, 신문, 금융, 조세, 노무, 공정거래 등) 법령 준수 여부 및 정도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200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2-1.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의 적정성(120)	2-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우수성(40)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기본방향 및 계획의 타당성·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차별성 및 독창성(40)	· 기존 라디오방송과의 차별성·전문성 강화 방안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1-3. 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독립성 및 자율성(40)	· 편성규약, 편성위원회 구성·운영 등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2. 방송 프로그램 제작·수급 계획의 적정성(80)	2-2-1.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50)	·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및 투자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2-2.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타당성(30)	· 방송프로그램 수급 및 투자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및 편성계획과의 정합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150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50)	3-1-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50)	· 청취자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수요 검토 및 분석 방법, 매체역할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50)	3-2-1. 지역적·사회적 기여실적 및 기여계획(25)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지역적·사회적 기여실적 · 신청법인의 지역적·사회적 기여 계획의 우수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2-2. 지역문화 창달에 대한 기여실적 및 기여계획(25)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문화 보존·발전 등 문화산업에 대한 기여실적 · 신청법인의 문화창달에 대한 기여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3-3. 콘텐츠의 지역성 구현 방안(50)	3-3-1.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계획(25)	·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편성계획의 우수성 및 편성계획의 지역적 균형성
	3-3-2. 지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계획(25)	· 지역 내 여론수렴 등 지역민의 관심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4. 조직·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200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4-1.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60)	4-1-1.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20)	·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 · 시장전망의 합리성 및 목표점유율 설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기업 내·외부 환경 분석의 적정성
	4-1-2. 라디오방송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계획의 적정성(15)	· 라디오방송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4-1-3. 추정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25)	· 추정재무제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기업 내·외부환경분석의 적정성, 추정 현금흐름에 기초한 사업성 분석(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내부수익율, 할인율)의 적정성
4-2. 인력·조직운영 계획의 적정성(40)	4-2-1.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20)	· 조직구조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인력구성의 구체성 및 적정성
	4-2-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20)	· 인력확보 방안의 적정성 · 교육훈련계획의 우수성·구체성 및 적정성
4-3.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40)	4-3-1. 경영의 효율성 확보 방안(20)	· 신청법인의 내·외부 경영환경과 관련한 경영효율화에 대한 전략 및 비전 등의 적정성 · 대표자 등 임원, 편성책임자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기타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의 적정성
	4-3-2.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20)	· 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 경영감시기구의 적정성 · 기타 경영 투명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4-4. 자금 조달 및 운영 계획(60)	4-4-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30)	· 최초 납입자본금 구성의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 자금조달 원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자금조달규모의 적정성
	4-4-2.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30)	· 시설투자자금 산출의 적정성 · 제작비 등 경상운영자금 산출의 적정성 · 기타자금 산출의 적정성

5. 재정적 능력 : 100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5-1.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무적 우수성(50)	5-1-1.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무적 우수성(50)	· 유동성, 부채 비중, 자기자본 대비 순 이익율, 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및 이에 준하는 평가지표에 따른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무적 우수성
5-2.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자금출자 능력(50)	5-2-1.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자금출자 능력(50)	· 현금성 자산 대 투자(출자)금액, 자기 자본 대 투자(출자)금액 및 이에 준하는 평가지표에 따른 자금출자능력의 적정성

6. 기술적 능력 : 100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6-1. 방송시설 구축계획의 적정성(40)	6-1-1. 방송제작·송출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40)	· 방송제작시설 구축계획의 효율성 및 구체성 · 송·중계소 구축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6-2. 방송시설 운용계획의 적정성(40)	6-2-1. 방송제작·송출시설 운용계획의 적정성(20)	·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계획, 시설운용· 유지보수 조직 구성의 효율성 · 시설운용계획의 타당성·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6-2-2. 방송제작·송출시설 투자계획의 적정성(20)	· 연도별 시설 투자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6-3. 난청 및 혼신 해소 계획(20)	6-3-1. 난청 및 혼신해소 계획의 적정성(20)	· 난청 및 혼신 해소 방안의 타당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전파월경 방지를 위한 이행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50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7-1. 방송발전 기여 계획(30)	7-1-1. 방송발전 기여 계획의 우수성(30)	·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 의지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7-2. 방송통신 발전기금 출연 계획(20)	7-2-1.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 계획의 우수성(20)	· 납입자본금의 5%를 최소 규모로 평가 - 5% 이상 제시할 경우 비율별 점수 차등 부여

1. 신청서류 및 제출 부수

가. 신청서류 구성

- ① 방송국허가신청서
- ② 서약서
- ③ 사업계획서
- ④ 청취자 의견청취용 요약문(5쪽 내외, 별도 제본 제출)
- ⑤ 사업계획서 요약문(25쪽 내외, 별도 제본 제출)
- ⑥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등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 ⑦ 첨부서류
- ⑧ 조건표

- 붙임의 허가신청서 양식은 표준양식이며, 각 신청법인 특성에 맞게 편집·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양식에 제시된 필수기재 항목은 모두 작성하되, 신청서 기본 양식 틀 내에서 추가항목 기재 가능, 단 본문 전체 300페이지 내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요약문은 별도로 25쪽 내외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항목을 적시하여야 함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등 기술관련 서류는 함께 게재된 작성요령 참조
- 첨부서류는 본문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허가 신청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
- 조건표는 사업계획서 본문과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간 관련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참고 : 조건표 작성 예시 >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본문 페이지	본문 제목	부속서류
1-1.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	1-1-1.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계획의 적정성	p.0 ~ p.0	제2장 1. 가. 방송사업 목표 및 비전	제1장 1-1.

나. 제출 부수

- 최초 접수 시 제본서류 3부(원본 1부, 사본 2부, 원본파일은 별도송부)

※ 보정 후 최종 접수 시 제본서류 15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4부)

구분	원본	사본	USB	비고
최초 접수시	1	4	1	신청서 파일을 저장한 USB 1개 제출
보정 후 재접수시	(원본 보정)	19	1	보정된 파일을 저장한 USB 1개 제출
계	1	23	2	

※ 제출서류 제본 방법 : 좌철, 요약문 및 조건표도 본문과 제출시기 및 부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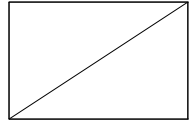
2. 작성 및 제출요령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술하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함
- 허가 신청서류는 신청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함
 - 다만, 기술·회계 등 특정부문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문기관 등을 밝혀야 함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Hwp)로 작성하고,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반드시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하여야 함
 - 글자모양 : 글꼴 휴먼명조, 글자크기 14포인트
 - 편집용지 여백 : 상·하 15mm, 좌·우 20mm, 머리말·꼬리말 10mm

- 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함
 - 계약서나 증빙서류의 원문이 외국어일 경우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함
- 도량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
- 사업계획 작성에 필요한 기본가정 및 전제조건은 아래 사항에 따르되 이를 별도로 적용할 때에는 그 구체적 근거를 밝혀야 함
 - 물가 : 신청공고일 현재의 불변가액
 - 환율 : 신청공고일 현재 최초로 고시된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 기준율
 - 차입금이자율 : 차입약정서 등에 명시된 이자율로 하되,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른 현행 이자율을 하한으로 함
 - 예금이자율 : 사업자 평균 수입이자율로 하되,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NH농협, 우리, 하나)의 평균 정기예금금리를 상한으로 함
 - 감가상각 : 신청공고일 현재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하고, 그 산정근거(잔존가액, 내용연수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제세공과금 : 신청공고일 현재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적용하되, 향후 적용할 세율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미래 세율 등을 적용
 - 광고수익 : 해당 지역의 광고시장 여건 및 방송광고요금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위 경제지표 등의 적용기준일람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하여야 함
-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도록 함
-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안쪽 면에는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같음'을 기재하고, 원본과 사본 모두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 사본의 경우 겹표지 오른쪽 상단에 ☒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류의 모든 날인은 법인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3. 작성 세부 지침 : 붙임 신청서류 양식 내 세부 지침 참조 바람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신청서

원 본

2021. . .

법 인 명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I. 방송국허가신청서	27
II. 서약서	31
III.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계획서	35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37
제2장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44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47
제4장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54
제5장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58
제6장 재정적 능력	65
제7장 기술적 능력	69
제8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71
IV. 청취자 의견청취용 요약문	73
V. 사업계획서 요약문	77

I . 방송국허가신청서

[] 지상파방송국
[]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최다액출자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		
		주전송장치	담당자 : E-mail :	전화:	팩스:
방송개요	방송유형	초단파(FM)방송		방송목적	FM방송용
	방송사항			운용시간	00:00부터~00:00까지
	방송구역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 일원 또는 일부			
	운용채널	99.9MHz, 95.5MHz, 100.7MHz			
시험전파	발사기간	신규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준공검사 때까지 기한을 정해 기재			
	발사내용	주파수 및 국명고지			
운용개시에정일		준공검사 수검 후(희망하는 개국일자 기재)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전파법」 제2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 지상파방송국
[] 지상파방송보조국 을 개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4.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채널운용계획 포함) 1부.(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시설설치 계획서(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1부. 7. 법인(또는 최대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8.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각 1부. 9.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10.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방송편성책임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II. 서약서

서 약 서

본 신청법인과 구성주주는 허가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서약하며,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서약합니다.

1. 본 신청법인과 구성주주 각인은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이면계약 등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참여하는 구성주주가 일체 없습니다.
2. 본 신청법인과 구성주주 각인은 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한 계약서 이외에 이면계약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한 사항이 없습니다.
3. 본 신청법인은 허가 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4. 본 신청법인은 허가 신청서류의 심사에 소요되는 전문용역비 등 실비를 부담하겠습니다.
5. 본 신청법인과 구성주주 각인은 상속·법원판결 및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지 않겠습니다.
6. 본 신청법인은 허가 신청서류에 기술한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계획이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7. 본 신청법인과 구성주주 각인은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유효기간 동안 방송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각종 허가조건 등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법인명 :

대표자명 : (인)

구성주주명 : (인)

※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모든 구성주주가 기명(서명) 날인함

Ⅲ. 사업계획서

1. 개 요

- 설립목적, 운영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

- 방송사업 운영 기반이 되는 가치 및 방송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연 혁

- 최초 법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

4. 법인 일반현황

구 분		세 부 내 역			
법인 명칭		국문		(약칭)	
		영문		(약칭)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법인설립일자			자본금(단위:백만원)		
구분	직위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임기
법인대표자					... ~ ...
편성책임자					
이사회 구성					... ~ ...
					... ~ ...
					... ~ ...
					... ~ ...
					... ~ ...

※ 법인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인대표자 아래 “단독/각자/공동” 여부 기재

※ 이사회는 상임, 비상임,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성명, 생년월일 및 주요 이력을 기술

※ 관련 부속서류

- 기존법인 : 법인정관(변경예정정관 포함)(공증받아 제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등 임원 및 편성책임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설립예정법인 : 발기인(법인설립 전인 경우 발기예정인 포함)이 기명(서명)날인한 정관(안)
(공증받아 제출), 법인설립계획서(공증받아 제출)
대표자 등 임원 및 편성책임자(법인설립계획서에 이를 명시)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5. 구성주주 현황

구성주주의 법인명 또는 성명 1)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유형 2)	출자액 ³⁾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주요 업종 ⁴⁾	주소 ⁵⁾	특수관계 여부 등 ⁶⁾	비고 ⁷⁾
			금액 (단위: 백만원)	비율 (%)	법인명 또는 성명 (특수 관계자 포함 지분율)	주소 (법인등록 번호 또는 주민등록 번호)				
합 계										

- 1) 법인명 또는 성명 란에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입할 것.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단체의 출자자를 구성주주로 간주하여 기재하고, 단체명을 병기할 것
- 2) 유형 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정부출연기관·외국법인·비영리법인·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 3) 출자액은 법인 설립 시(기존법인일 경우 유상증자 후) 법정자본금(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함
- 4) 주요업종 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를 병기할 것
- 5) 주소는 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함
- 6) 구성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특수관계(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의 내용(예 : (주)OOO의 임원)을 표기하고, 특히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기업집단과 정기간행물 등의등록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칭을 기재할 것
- 7) 비고란에는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할 것

※ 허가신청서 제출 이후 구성주주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관련 부속서류

- 기존법인 :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기존법인과 각 유상증자 참여주주 간)(공증받아 제출)
- 설립예정법인 :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구성주주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계약서(인감증명서 첨부)(공증받아 제출)

※ 주주의 권리·의무관계, 경영 협력계획 등에 관하여 합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공통사항 : 모든 구성주주 중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요주주 중 개인인 경우 주요 이력 및 출자 목적을 별도로 기술한 자료, 이력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요주주(기존법인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주주만 해당)의 경우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공증받아 제출)

※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서(공증받아 제출)

6.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방송법 시행령 조항		해당 특수관계자 명 ¹⁾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구성주주가 개인인 경우	제3조제1항 제1호가목		
	제3조제1항 제1호나목		
	제3조제1항 제1호다목		
구성주주가 법인인 경우	제3조제1항 제2호가목		
	제3조제1항 제2호나목		
	제3조제1항 제2호다목		
	제3조제1항 제2호라목		

1) 특수관계자별로 작성

7. 구성주주 중 주요주주

법인(단체)명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요이력(학력, 경력 등) :					
이사회 구성	※ 상임, 비상임,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을 기술					
연혁	※ 사업내용과 관련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기술					
사업목적	※ 정관상의 사업목적과 주요사업부문을 중심으로 기술					
주요주주	법인명/성명	지분율	주요업종	대표자	최다주주	주소

※ 법인이나 단체에 한해 기술

※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주요조직 내지 회원 현황 등을 단체 성격에 부합하게 기술

8. 구독률

구성주주 명칭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수	총 가구수	구독률
	①	②	①/②
		21,484,785	
계			

※ 구성주주 가운데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에 해당

※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는 제출한 2020년도의 유가판매부수 중 가구대상 판매부수로 계산함

※ 관련 부속서류 :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자료

- ABC협회의 인증을 받은 신청공고일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발생부수 및 유가판매부수(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 판매부수로 구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정),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

※ 지상파라디오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어떻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방송사업 목표·비전

- 방송사업 목표, 비전,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계획

-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대표자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의지 등을 포함하여 작성

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시사·보도 및 선거 관련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 방안, 대표자 등의 방송의 공정성 실현 의지 등을 포함하여 작성

라. 방송의 공익성 확보 계획

- 방송의 공익성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재난방송 편성 계획, 대표자 등의 방송의 공익성 실현 의지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청취자 권익 실현 방안

※ 방송법상 시청자 권익 보호 관련 규정(「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이행 계획 등 청취자 보호 및 권익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청취자 권익 보호 방안

- 청취자 권익 실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어린이·청소년·장애인 등 소수 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계획(예시 : 편성 비율, 자막 방송·수화방송·화면해설방송 등 기술적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나. 청취자 참여 방안

- 청취자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방송법 제87조), 연도별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계획(방송법 제89조) 등을 포함하여 작성

다. 청취자 불만 처리계획

- 청취자 불만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자체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계획, 자체심의 절차, 청취자 민원처리 계획, 민원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

3. 신청법인의 적정성 확보 여부

※ 신청법인 및 단체, 주요주주 및 출자자 등의 적정성 확보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신청법인 형태 및 주요주주 개관

- 신청법인(재단 및 사단법인, 법인격없는 단체 등 포함) 및 구성주주의 일반현황을 요약 기술하되, 주요 의사결정 절차, 이사회 구성 현황, 주요 사업부문, 채용구조와 채용 형성과정, 출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

나.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정책목표 실현 의지

다.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공익 및 자선사업 참여 실적

- 최근 5년간 신청법인, 임원(대표자, 편성책임자 포함), 주요주주 등의 공익 및 자선사업 참여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최근 5년간 신청법인, 임원(대표자, 편성책임자 포함), 주요주주 등이 방송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증권거래법 등 방송, 통신, 신문, 금융, 조세, 노무, 공정거래 등과 관련된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일, 처분 종류, 위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순번	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비고

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 지상파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편성할 것인지 운영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기획·편성 기본 방향

※ 관련 부속서류 : 주간기본편성표

나. 분야별 주요 프로그램

- 연도별(2022년~2026년) 주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방송내용, 제작방식, 장르, 청취대상, 제작 및 구매예산(편당 제작비, 편수, 연간 제작비 등 - 직접제작비만 산정) 등에 대해 작성

다.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

- 공익성이 명확한 프로그램의 편성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애인, 어린이, 노인,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등 편성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라. 기존 방송프로그램과의 차별화 계획

- 기존 라디오방송과의 차별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마. 방송 프로그램 편성 자율성 확보 방안

- 편성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편성 규약 제정, 편성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방송 프로그램 제작·수급계획

※ 방송프로그램 수급과 그 투자 계획을 향후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수급에 따른 비용분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가. 제작·수급 기본방향

나. 프로그램별 수급 계획

(단위 : 분 / 천원 / 편)

연도 ¹⁾	프로그램 명	장르	기획 의도	주요 내용	제작원 ²⁾	주 시청 대상	편당 시간	편당 소요 비용 ³⁾	연간 편성 편수 및 시간
2022									
소계									
2023									
소계									
2024									
소계									
합계									

1)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작성

2) 제작원은 자체제작, 수중계, 외주제작, 구매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3) 소요비용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임

다. 자체제작 및 편성계획

(단위 : 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체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 자체제작 시간이 자체편성 시간보다 클 수는 없음(자체편성은 자체제작+외주제작+외부구입)

라. 제작주체별 프로그램 수급 계획

(단위 : %,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본사(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		00%									
자체 제작	순수 자체제작	00%									
	공동 제작	00%									
외주 제작	순수 외주	00%									
	특수관계자 외주	00%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내	00%									
	국외	00%									
기타 프로그램		00%									
연간 총 전체방송		100%		100%	-	100%	-	100%	-	100%	-

- 1) 비용 :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
- 2) 순수자체제작 : 방송사업자가 단독으로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
- 3)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기획, 투자, 제작하는 경우(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4)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경우(방송법 제72조제1항). 단, 공동제작 3요건 중 1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외주제작에 포함. 구매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
- 5) 국내물 구매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6) 국외물 구매 : 외국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마. 분야별 방송비율

① 분야별 방송비율

(단위 : 분, %)

분야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보도	시간					
	비율					
교양	시간					
	비율					
오락	시간					
	비율					
전체 방송	시간					
	비율	100%	100%	100%	100%	100%

※ 비율란에는 해당 방송국의 연도별 전체 방송 시간 대비 비율 작성

② 제작주체에 따른 분야별 방송비율

(단위 : 분, %)

분야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본사 (또는 제휴사) Relay 프로 그램	보도	시간					
		비율					
	교양	시간					
		비율					
	오락	시간					
		비율					
	소계	시간					
		비율					
자체 제작	보도	시간					
		비율					
	교양	시간					
		비율					
	오락	시간					
		비율					
	소계	시간					
		비율					
외주 제작	보도	시간					
		비율					
	교양	시간					
		비율					
	오락	시간					
		비율					
	소계	시간					
		비율					
구매	보도	시간					
		비율					
	교양	시간					
		비율					
	오락	시간					
		비율					
	소계	시간					
		비율					
전체 방송		시간					
		비율	100%	100%	100%	100%	100%

※ 비율란에는 해당 방송국의 연도별 전체 방송 시간 대비 비율 작성

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 지상파라디오방송국 신설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청취자의 지역·사회·문화적 수요 분석 결과, 매체의 역할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관련 부속서류 : 청취자의 지역·사회·문화적 수요 분석 결과 입증 자료

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지역 내 공익·자선사업 실적, 지역사회 및 지역콘텐츠 사업자들과 협력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문화보존·발전 등 문화산업에 대한 기여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 관련 부속서류 : 기여 실적 입증 자료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기여실적 >

구 분	법인명 ¹⁾	일 자 ²⁾ (기간)	지 역 ³⁾	유 형 ⁴⁾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 용	금 액 ⁵⁾ (백만원)	비 고
지 역 적								
	소 계							
	합 계							
사 회 적								
	소 계							
	합 계							
문 화 적								
	소 계							
	합 계							
총 계								

1) 신청법인 또는 주요주주별로 작성(개인주주의 경우 성명을 기재)

2)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 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으로 기재

3) 시·도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4)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5)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적 기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사회적 책임 이행방안 등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신청법인의 문화창달에 대한 기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지역행사, 공동체 등 연계 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3. 콘텐츠의 지역성 구현 방안

가. 기본 방향

나. 세부 추진 계획

-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편성·제작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성 구현에 이바지하는 지역 행사, 지역 주요소식(지역 보도 등), 지역민의 생활 등을 담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지역민의 관심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다양한 지역 의제*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을 포함하여 작성

* (예시) 재난, 교통, 지역소속감, 접경지역, 실향민,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통근·통학, 부동산 등

다. 지역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계획

(단위 : 분,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 지역성 구현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ex, 지역축제, 지역소식 전달 프로그램 등) 내역 기재

※ 비율란에는 해당 방송국의 연도별 전체 방송 시간 대비 비율 작성

라. 지역 프로그램 제작·투자 계획

(단위 : 천원,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								
	-								
	-								

※ 전년 대비 증감비율 작성(2022년도는 “-”로 표기)

마. 주요 지역 프로그램 편성 계획

분야 (유형)	프로그램명	기획의도 및 개요	방송시기	방송시간(분)	비고

※ 향후 5년간(2022년~2026년) 주요 지역 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기재

※ 방송시기에는 편성 유형에 따라 00년 상반기, 하반기 혹은 매일 또는 요일(월화, 주말 등)을 적어도 무방

※ 분야(유형)란에는 분야(보도, 교양, 오락 등) 구분 및 특집, 정규 등 편성 유형 기재

※ 비고란에는 자체제작, 외주, 구입 등 수급 유형, 기타 특이사항 등 명시

1. 사업추진 계획

가.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

- 향후 방송시장 등을 전망(근거도 함께 제시)하고 이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목표 시장점유율 포함)을 기술
- 신청 사업자의 내·외부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

나. 라디오방송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계획

- 방송·광고시장 상황에서 라디오방송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라디오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다. 사업성 분석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등에 근거하여 법인설립 등기시점(기존 법인의 경우 변경등기 시점)부터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현금흐름표 등 각각의 재무제표를 연도별로 구분(최초연도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그 추정근거를 명시
- 기존법인의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와 신규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로 구분하여 제시
- 추정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DCF(현금흐름할인법) 방법에 의한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손익분기점을 산출하고, 할인율 등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2. 조직 및 인력구성·운영 계획

가. 기본 방향

-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을 기술하되, 기본원칙, 조직도, 부서별 및 직급별 인력계획,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 업무분장, 임금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

나. 인력 확보방안

- 인력소요 규모를 능력 수준별 및 직능별로 기술(인력소요 산출 근거 명시)하고,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인력확보 방안 및 계획(경력, 신입으로 구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인력 확보 계획 >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프리랜서						
파견직						
기타						
합 계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가. 전문인력 양성 계획

-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본방향, 연도별 주요 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교육훈련 계획

☐ 교육훈련 기본방향

-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기본방향, 연도별 주요 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연도별 주요 교육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교육내용	교육방법	비용	기대효과
2022년		강의/워크숍 등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4.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 대표자의 전문성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 감시 시스템 등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대표자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

- 신청법인의 내·외부 경영환경과 관련한 경영효율화 전략 및 비전을 구체적으로 기술

※ 관련 부속서류 :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

- 대표자 등 임원, 편성책임자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경영진의 업계 관련 경력, 전문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

나.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

- 신청법인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소유와 경영 분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운영 계획, 경영감시기구(사외이사, 감사 등) 구성·운영 방안, 기타 경영 투명성 확보 계획(소액주주보호장치 등) 등을 포함하여 작성

5. 납입자본금 등 규모

가. 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

1) 주식회사 등

구분			금액, 주식수
납입 자본금	①	주당 발행예정금액(원)	
	②	설립 시 발행예정 주식 수(주)	
	① x ②	납입 자본금 총계(백만원)	

2)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구분	금액
출자 및 출연 예정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재원 ※ 이에 준하는 형태의 재원인 경우 초기 시설투자 및 운영, 프로그램 제작, 방송국 운영 비용 등을 구분하여 작성	

※ 시기 : 허가받은 날로부터 방송 개시 후 1년간

나. 신청법인이 기존법인의 경우 :

1) 주식회사 등

구분			금액, 주식수
신규 투자금액	①	자산 중 신규 방송사업을 위한 투자 금액(백만원)	
유상증자	②	주당 발행예정금액(원)	
	③	유상증자 시 발행예정 주식 수(주)	
	④ = ② x ③	유상증자 예정금액 총계(백만원)	
총계	① + ④	납입 자본금 총계(백만원)	

2)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구분	금액
출자 및 출연금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재원 ※ 이에 준하는 형태의 재원인 경우 초기 시설투자 및 운영, 프로그램 제작, 방송국 운영 비용 등을 구분하여 작성	

※ 시기 : 허가받은 날로부터 방송 개시 후 1년간

※ 기존법인 대상 관련 부속서류

- 자산 중 신규 방송사업을 위한 투자금액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또는 의사결정기구 결의서 (공증받아 제출)
- 유상증자, 출자·출연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 의사결정기구 결의서(공증받아 제출)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oo 회계법인 대표 : (인)

담당사원 : (인)

6. 자금조달 및 운영 계획

※ 방송국 운영 재원과 관련한 자금조달 및 프로그램 제작, 시설투자, 경상운영비 등의 운영계획(2022~2026년)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자본금 조달 계획

- 최초 납입자본금 등 구성 계획을 요약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

※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서, 주요 주주 등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통해 출자(증자)예정금액의 실현가능성 평가

- 자본조달계획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구분하여 추정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 타인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대출확약서 등 근거자료를 부속 서류로 제출하고, 향후 5년 이내(2022년~2026년) 자본금 증자를 계획한 경우 이에 대한 주요주주의 출자확약서를 부속서류로 제출

※ 관련 부속서류 : 차입약정서(대출확약서), 증자 관련 주요주주의 출자확약서

- 주요주주가 개인 등인 경우 신청공고일 현재 자금조달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소득원, 보유재산현황 및 납세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

※ 관련 부속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납부 확인서(재산세) 등 소득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

나. 자금 운영 계획

- 방송국 설립 이후 5년 간(2022년~2026년) 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제작, 기타 방송국 운영 예상 금액, 산출 근거 및 연도별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기술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무비율 등을 아래 1, 2에 따라 작성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결산서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
-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경우 아래 1, 2에 준하는 평가지표가 별도로 있을 시 관련 자료 추가 제출
-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아래 1, 2의 내용이 감사보고서, 결산서 등의 내용과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관련 부속서류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최근 4년간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결산서, 최근 3년간 납세실적 증명서(발급일 현재 납세증명서 포함)

- 최근 4년 이내 합병(분할)한 법인의 경우 합병회사(분할회사)와 피합병회사(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실적을 모두 제시하여야 하며, 합병(분할)계약서, 합병(분할)신고서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부속서류 : 합병(분할)계약서, 합병(분할)신고서 등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는 신청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용등급 (회사채 발행기준)을 정부에서 인가받은 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중 1개의 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부속서류 :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신용등급 증빙서류

1.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3년간 주요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구 분		() 회사	() 회사	() 회사
(1)유동비율	2018년			
	2019년			
	2020년			
(2)부채비율	2018년			
	2019년			
	2020년			
(3)자기자본순이익률	2018년			
	2019년			
	2020년			
(4)총자산증가율	2018년			
	2019년			
	2020년			
(5)매출액영업 이익률	2018년			
	2019년			
	2020년			
(6)매출액증가율	2018년			
	2019년			
	2020년			
(7)총자산회전율	2018년			
	2019년			
	2020년			
(8)(현금,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대 투자(출자)금액				
(9)자기자본 대 투자(출자)금액				
(10)신용평가등급				

1) 재무비율 계산식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 × 100
-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평균)) × 100

- 총자산증가율 = [(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 x 100] - 100
 -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x 100
 - 매출액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x 100] - 100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평균)
- ※ 자산 및 자본의 금액은 기초와 기말잔액의 평균치이며 자본은 당기순손익이 가감된 것임. 단, 유동비율 · 부채 비율 산식 중 자산 · 부채 및 자본의 금액은 기말잔액임
-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자기자본은 신청공고일 직전 회계연도 말 금액으로 하며, 투자(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기존법인의 투자금액 : 내부유보금을 통한 2021년도 투자예정금액(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적시할 것)
 - 주요주주의 출자금액 :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출자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
 - 기존법인의 경우, 증자 참여 주주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대 투자(출자)금액 비율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 상품)/투자(출자)금액] x 100
 - 자기자본 대 투자(출자)금액 비율 = (자기자본/투자(출자)금액) x 100
- 3) 합병법인의 합병을 전후한 총자산증가율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 전 자산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포함함
- 4) 분할법인의 분할을 전후한 총자산증가율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 후 자산은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포함함
- 5) 신용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별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oo 회계법인 대표 : (인)
 담당사원 : (인)

2.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최근 4년간 재무제표 주요 항목

o 법인 명칭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무상태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자산				
	부채				
	자기자본 ¹⁾				
손익계산서 항목	당기순이익				

1)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를 의미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oo 회계법인 대표 : (인)

담당사원 : (인)

1. 방송제작·송출시설 설치계획

- 방송제작시설(사옥 포함) 및 송·중계소 등 송출시설 설치계획 및 시설 구성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계약서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송신망 구축계획 및 이에 따른 예상 방송구역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방송제작·송출시설 운용계획

- ※ 향후 5년간 연도별 방송시설 구축 및 투자계획을 제작, 송출, 송신 시설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가. 방송시설 운용 계획

나. 방송시설 유지·보수 계획

3. 방송제작·송출시설 투자계획(2022~2026년)

(단위: 천원)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비고

4. 난청 및 혼신 해소 계획

- 난청 및 혼신 해소 방안 및 전파 월경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관련 시설 구축 및 투자계획, 전파월경 방지 대책의 구체적 이행계획(비용부담, 투자계획 등) 등을 포함하여 작성

1. 방송발전 기여 계획

-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 계획을 실현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금 규모

- 출연규모, 출연시기 출연방안, 출연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허가증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Ⅳ. 청취자 의견청취용 요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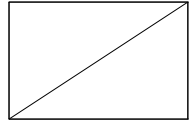
□ 신청법인명 :

구 분	내 용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 대표자 (성명, 주요 이력) · 편성책임자 (성명, 주요 이력) · 주요주주 :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4.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6. 재정적 능력	
7. 기술적 능력	
8.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V. 사업계획서 요약문

□ 신청법인명 :

구 분	내 용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 대표자 (성명, 주요 이력) · 편성책임자 (성명, 주요 이력) · 주요주주 :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4.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6. 재정적 능력	
7. 기술적 능력	
8.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원 본

2021. . .

법 인 명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I .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87
----------------------	----

II .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93
-----------------------	----

III . 시설설치계획서	119
---------------------	-----

I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지상파방송국 또는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허가)					
① 목 적		초단파방송업무(FM방송)			
② 개설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③ 방송사항					
④ 방송구역에 관한 사항		(1) 방송구역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 ※ 기본계획 상 방송구역을 고려할 것		
		(2) 방송구역내의 가구수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방송구역별로 기재)		
		(3) 방송구역내의 수신예상가구수	일원, 일부를 고려한 수신예상가구수 ※ 시설설치계획서 내용과 일치		
⑤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1) 송신소 소재지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기재		
		(2) 송신안테나의 위치	동경 북위 도 도 분 분 초 초		
		(3) 연주소 소재지	방송사항의 제작·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장소를 기재		
⑥ 희망하는 전파 형식,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		(1) 전파의 형식	모노 180KF3EGN 또는 스테레오 260KF8EHF		
		(2) 주파수(kHz, MHz)	99.9MHz, 95.5MHz, 100.7MHz		
		(3) 안테나공급전력(W, kW)			
⑦ 운용시간		시부터 시까지			
⑧ 정보통신공사사업자에 관한사항 및 준공 예정일		(1)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		(2) 생년월일	
		(3) 소재지	준공시 제출		
		(4) 등록번호		(5) 준공예정일	
⑨ 무선설비 등의 공사비 (계: 원)	송신소	(1) 토지 및 건물 (3) 안테나와 접지장치 (5) 기타	원 원 원	(2) 송신장치 (4) 전원장치 ※ 시설설치계획서 투자에 관한 사항 참고	원 원
	연주소	(6) 토지 및 건물 (8) 기타	원 원	(7) 연주소 설비 ※ 시설설치계획서 투자에 관한 사항 참고	원
⑩ 공사비지출방법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원	(2) 사채	원
		(3) 차입금	원	(4) 기타	원

210mm×297mm[백상지(80g/㎡)]

⑪ 운영 계획	(1)경영형태							
	(2)자본금액		사업계획서 ⑥ 재정·기술적능력 및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참고					
	○ 주된 출자자 및 출자액							
	(3)성명	(4)대표자	(5)생년월일	(6)소유 주식수	(7)출자금액	(8)지분율	(9)종별	(10)비고
	제2면 뒤쪽 기재요령 참고							
	○ 경영에 대한 지배권자(임원)							
	(11)성명	(12)생년월일	(13)직위	(14)담당	(15)겸직	(16)이해관계	(17)비고	
	제2면 뒤쪽 기재요령 참고							
	○ 다수의결권자(의결권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18)성명	(19)생년월일	(20)주소	(21)의결권수	(22)의결권의 총수에 대한 비율		(23)비고	
	제2면 뒤쪽 기재요령 참고							
	○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							
	(24)방송사항				(25)1주간당 시간 비율			
	사업계획서 ③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참고							
	○ 대표적인 1주간의 방송프로그램·주간기본편성표 붙임							
	○ 타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송시간							
	(26)공급국명		(27)1주간의 시간		(28)협정내용		(29)비고	
	중계 개념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 방송의 주사업 또는 부대사업의 구별							
	○ 사업수지예건(내역은 별첨)							
(30)수입				원	(31)지출		원	
(32)이익금				원	※ 제2면 뒤쪽 기재요령 참고			

210mm×297mm[백상지(80g/㎡)]

기 재 요 령

1. 제①란 : 중파방송업무, 단파방송업무, 초단파방송업무, 텔레비전방송업무, 팩시밀리방송업무 또는 국제방송업무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제④란 (1)
 - 시·군·구 등의 행정구역 명칭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이에 의하여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이하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파방송업무를 행하는 방송국의 경우에는 수신대상지역을 표시합니다.
 - 20만분의 1 이상 정밀지도에 잡음구역에 따른 전계강도곡선으로 방송구역을 표시합니다.
 -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블랭킷 에어리어(blanket area)에 대하여는 발사안테나의 위치를 표시하는 5만분의 1 이상 정밀지도에 표시합니다.
 - 텔레비전방송 및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에 대하여는 「전파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면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제④란 (2)~(3) : 위 (1)의 방송구역별로 기재합니다(세부내용은 별첨할 수 있습니다)
4. 제⑤란 (2) : 송신안테나의 위치를 세계측지계(WGS84좌표계) 좌표로 기재합니다. 5만분의 1 이상 정밀지도에 표시합니다.
5. 제⑨란·제⑩란·제⑪란·제⑫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운영하는 방송국 및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한 방송국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제⑪란 (1) : 개인경영·회사·공익법인·공공단체 등으로 구별하여 기재합니다.
7. 제⑪란 (2) :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총수·종류·액면·발행액수 등을 기재하고,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기부금 등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제⑪란 (3)~(10)
 - (3) 성명란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총자본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를 기재합니다.
 - (4) 대표자란에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5)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6) 소유주식수를 대표자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7) 출자금액은 소유주식수에 그 주식의 액면금액을 곱한 값을 기재합니다.
 - (9) 종별란에는 주식의 종류·회원·조합 등의 출자금·기부금 등으로 구별하여 기재합니다.
 - (10) 출자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비고란에 이를 기재합니다.
9. 제⑪란 (11)~(17)
 - 겸직란에는 다른 사업의 임원을 겸한 경우 그 법인명 및 직위를 기재하고, 대표권을 가진 임원에 관하여는 비고란에 표시합니다.
 - 이해관계란에는 본 방송국과 겸직한 사업간에 있어서의 출자·광고제공·뉴스제공·물건제공·대리점역할등을 기재합니다.
 - 비고란에는 외국인인 경우에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10. 제⑪란 (18)~(23)
 - 성명란에는 의결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설립중의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발기인 전원을 기재합니다.
11. 제⑪란 (30)~(32) : 제1차연도, 제2차연도, 제3차연도별로 기재합니다.

Ⅱ.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지상파방송국 또는 지상파방송보조국)									
① 송신부	(1)송신방식	초단파방송 송신의 표준방식(모노포닉 또는 스테레오 포닉방송)							
	(2)장치구분	송신기가 2개 이상인 경우 주장지, 예비장치로 기재							
	(3)정격출력	평균전력을 기재		(4)실효복사전력 (ERP)	출력,이득을 더하고 손실을 뺀 전력을 기재				
	희망 또는 발사 가능한 전파특성	(5)전파형식		(6)주파수		(7)주파수범위			
		모노 180KF3EGN 스테레오 260KF8EHF		99.9MHz, 95.5MHz, 100.7MHz		88~108MHz			
		(8)발진방식		(9)변조방식		(10)최고변조 주파수			
		PLL		주파수 변조		모노 15kHz 스테레오 53kHz			
	(11)주파수변환 방식	직접FM 변환방식							
	(12)주파수편이억제장치	Limiting Amp							
	(13)안테나공급전력저하장치	PA 전압조정							
	종단부트랜지스터 (IC 또는 진공관)	(14)명칭		(15)개수		(16)비고			
		송신기 납품 회사에 문의							
	스푸리어스발사 제거장치	(17)방식		(18)제거대상 주파수		(19)삽입손실			
송신기 납품 회사에 문의									
송신장치제원	(20)제조사명		(21)형식 또는 명칭		(22)일련번호 및 제조연월일				
	준공시 제출		준공시 제출		준공시 제출				
②수신부 (주·예비 장치)	(1)전파형식 및 주파수범위		(2)국부발진주파수와 중간주파수			(3)중간주파증폭부통과대역폭 (-6dB점)			
	해당사항 없음								
	(4)수신채널 및 수신사이트명		(5)제조사명		(6)형식 또는 명칭		(7)일련번호 및 제조연월일		
	해당사항 없음								
③ 송신 안테나 계 등	안테나	(1)형식 및 구성	(2)편파면	(3)이득(dB)	(4)지상고 (m)	(5)해발고 (m)	(6)주복사각도 또는 판넬방향		
		주·예비를 구분하여 기재	원형	상대이득 값으로 기재 (dBd)	지상에서 안테나 중심(복사체)까지의 높이	해면에서 안테나 중심(복사체)까지의 높이	무지향 또는 지향성패턴 일 경우 판넬별 주복사각도 기재		
	(7)전기적 틸트	급전선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만든 안테나 기울기(각도)				(8)방향별 틸트	기계적으로 만든 안테나 기울기(각도)		
	급전선	(9)종별	(10)길이(m)	(11)손실(dB)		(12)기타	(13)비고		
		안테나 제조회사에 문의							
(14)전체 손실(dB)		안테나 제조회사에 문의							

210mm×297mm[백상지(80g/㎡)]

④ 수신 안테 나계	안테나	(1)형식과구성	(2)편파면	(3)이득 (dB)	(4)지상고 (m)	(5)해발고 (m)	(6)지향 각
		해당사항 없음					
	급전선	(7)종별	(8)길이(m)	(9)손실(dB)	(10)기타		
해당사항 없음							
⑤ 연주 장치	(1)종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5)비고		
	스튜디오에 있는 장비를 기재하며 콘솔, 오디오믹서, 오디오파일, 송출서버 등이 있음						
⑥ 조정 장치	(1)종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5)비고		
	주조정실,부조정실에 있는 장비를 기재하며 스테레오제너레이터,조정증폭기,전치증폭기 등이 있음						
⑦ 전원 설비	구분		(1)종류	(2)용량	(3)전압	(4)상수	(5)비고
	연주소	주	건물주와 상의 ?				
		예비	(예를 들어 상전(UPS) 15KVA AC220V 60Hz 비상발전기 공용사용 등)				
	송신소	주	건물주와 상의 ?				
예비							
⑧ 접지 방식	(1)송신기	심굴접지,1종접지 등		(2)접지저항	건물주와 상의 ?		
	(3)안테나	건물주와 상의 ?		(4)접지저항	건물주와 상의 ?		
	(5)기타	건물주와 상의 ?					
⑨ 안테 나설 치대 및 급전 선주	구분		(1)종류	(2)높이	(3)기부지상고	(4)공용하는 방송국	(5)주수
	안테나설치대 (안테나를 설치한 구조물)		철탑,강관주,원폴, 통신주,사각자립식 등	건물높이를 제외한 안테나 전체 높이	건물+안테나 높이	해당사항 없으면 생략가능	1
	급전선주		해당사항 없음				
⑩ 부속 설비	의사안테나		(1)종류 무유도저항	(2)용량 ? W	(3)개수 1개		
	자동경보장치 또는 자동감시장치	(4)경보를 받거나 감시하는 장소			연주소		
		(5)경보 또는 감시 항목			송신기,전원,ACU 등 감시		
	자동제어장치(원격제어장치포함)	(6)제어장소			연주소		
		(7)제어 항목			송신기,ACU,PIC,전원 등		
⑪기타(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기재)							
⑫첨부도면 및 자료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5) 안테나계 구성약도 (6) 송신안테나 지향특성도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8)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에 따른 방송구역 산출근거							

⑫ 첨부도면 및 자료

-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 (5) 안테나계 구성약도 (6) 송신안테나 지향특성도
-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 (8)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에 따른 방송구역 산출근거

-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 표시도 : 5만분의 1지도에 표시
-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 국사,안테나 등 기재하고 안테나부근 인접무선국 및 전파 장애 시설물을 표시
-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 M/W 또는 광(전용회선) 등 중계망 구성과 방식을 기재
- (4) 송신기 계통도(구성도) 및 회로도 : 허가신청시 제조자명이 결정되지 아니한때에는 준공시제출로 할 수 있다.
- (5) 안테나계 구성약도 : 안테나 취부상황을 평면도(방위표시) 및 측면도로 작성
- (6) 송신안테나 지향특성도 : 수평면 및 수직면 지향특성도를 각각 작성하고, 1도 단위로 안테나 방사전력의 수직, 수평값을 제출(엑셀로 된 자료) / 안테나 공사업자 문의 ?
- (7), (8)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방송구역 산출근거 : 공사업자 문의 ?
 - ※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82호, 2020.12.31.) 참고

① (4) 실효복사전력 산출자료 예시

가. 출 력 : 10W

나. 주파수 : 희망 주파수

다. 공중선이득 : 4.12dB

라. 급전선 및 기타손실 : 1.75dB

= Cable 손실 0.33 + 기타 손실 1.42(분배 & BPF 등)

마. 실효복사전력(Pe) : 17.258W

= 10W(10dB) + 공중선이득(4.12dB) - 급전선 및 기타손실(1.75dB)

첨부도면 및 자료 설명자료(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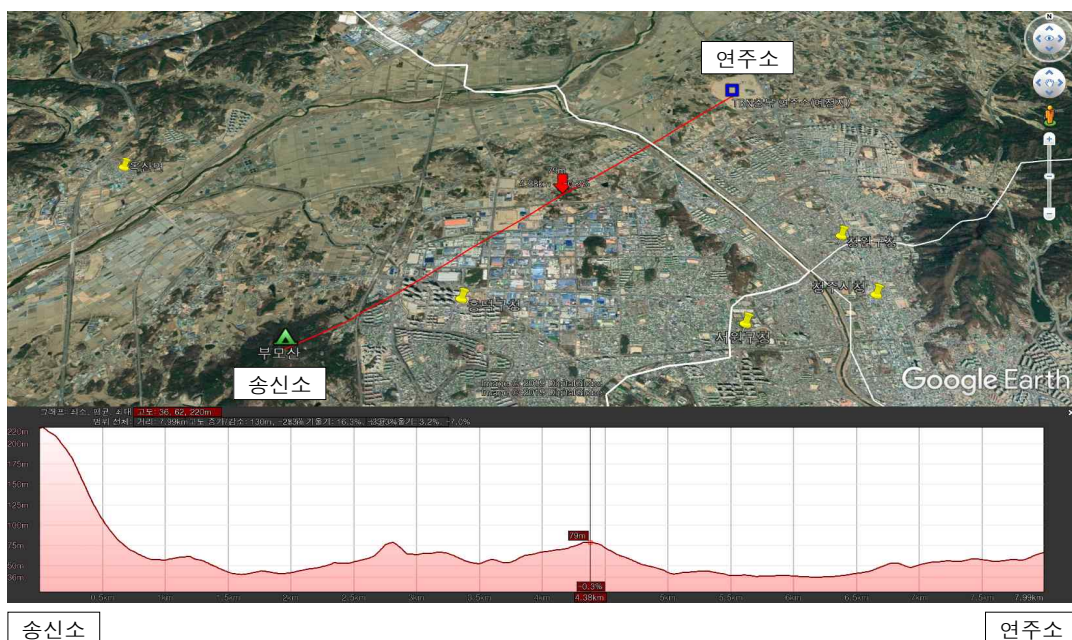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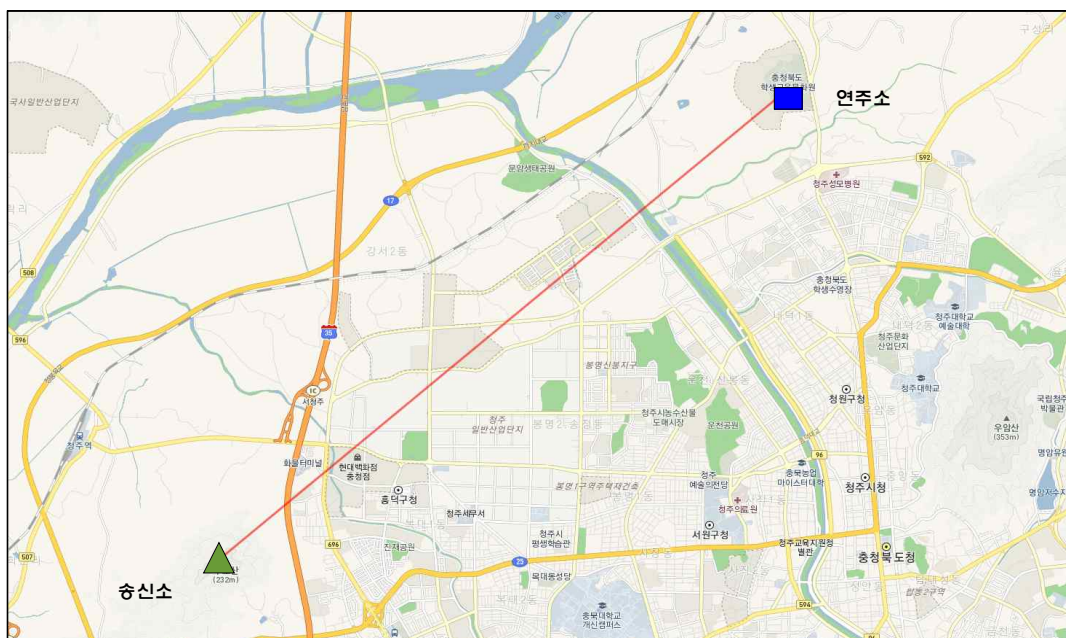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가. 연주소 :

- 주소 :
- 위치 : 위도) $36^{\circ} 40' 59.10''$ 경도) $127^{\circ} 28' 33.10''$

나. 송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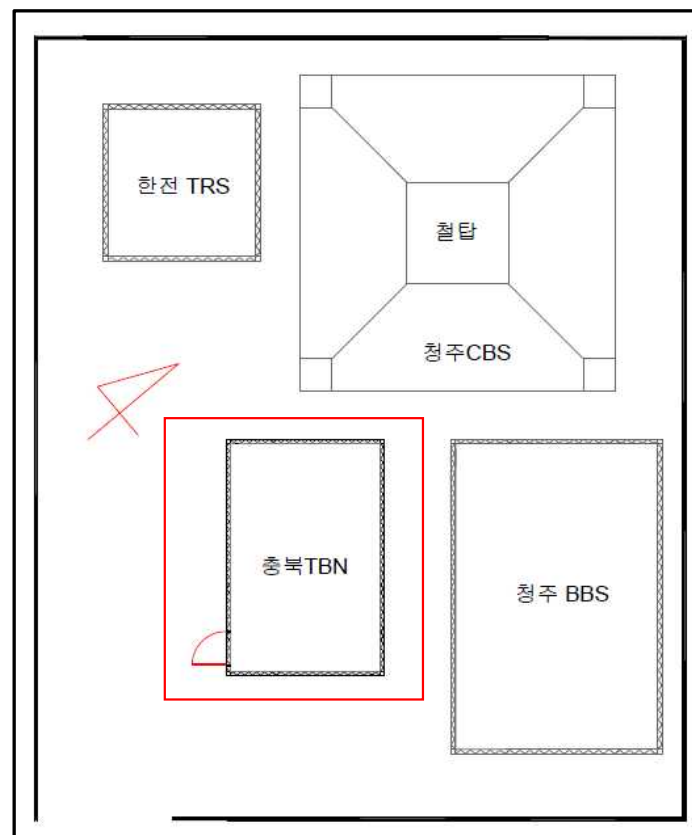
- 주소 :
- 위치 : 위도) $36^{\circ} 38' 3.79''$ 경도) $127^{\circ} 24' 34.65''$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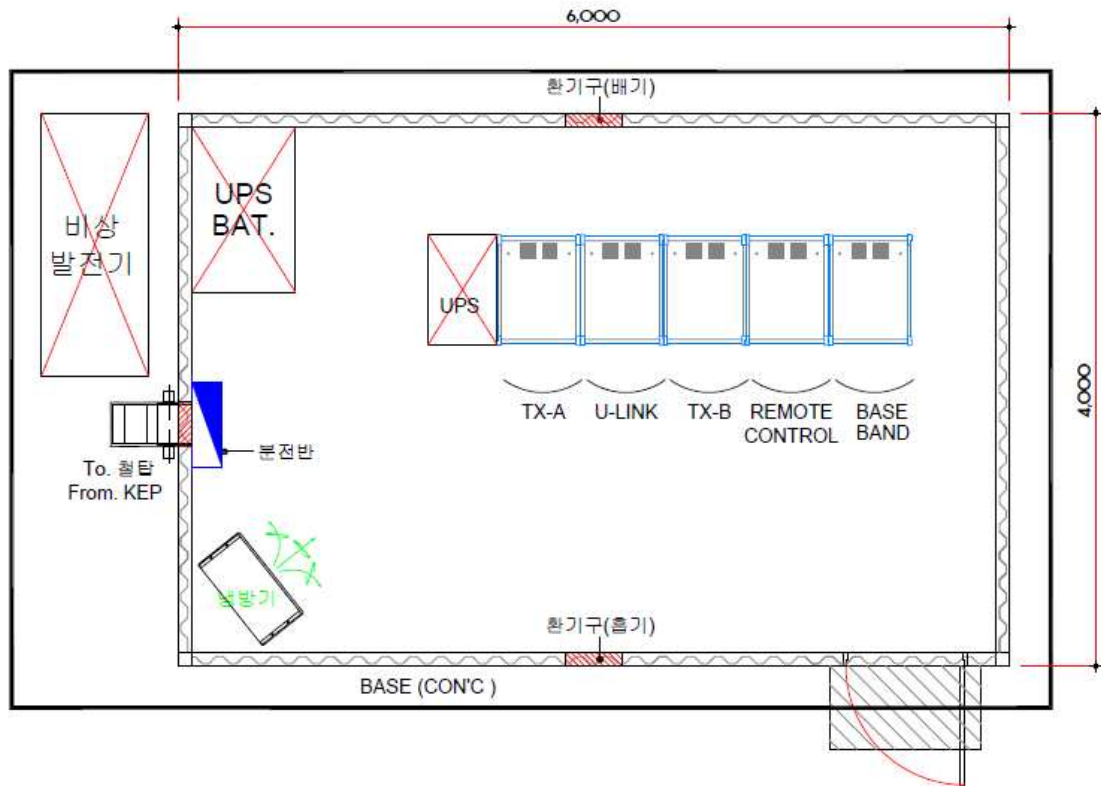
가. 부지내 시설

< 송신소 설치 예정장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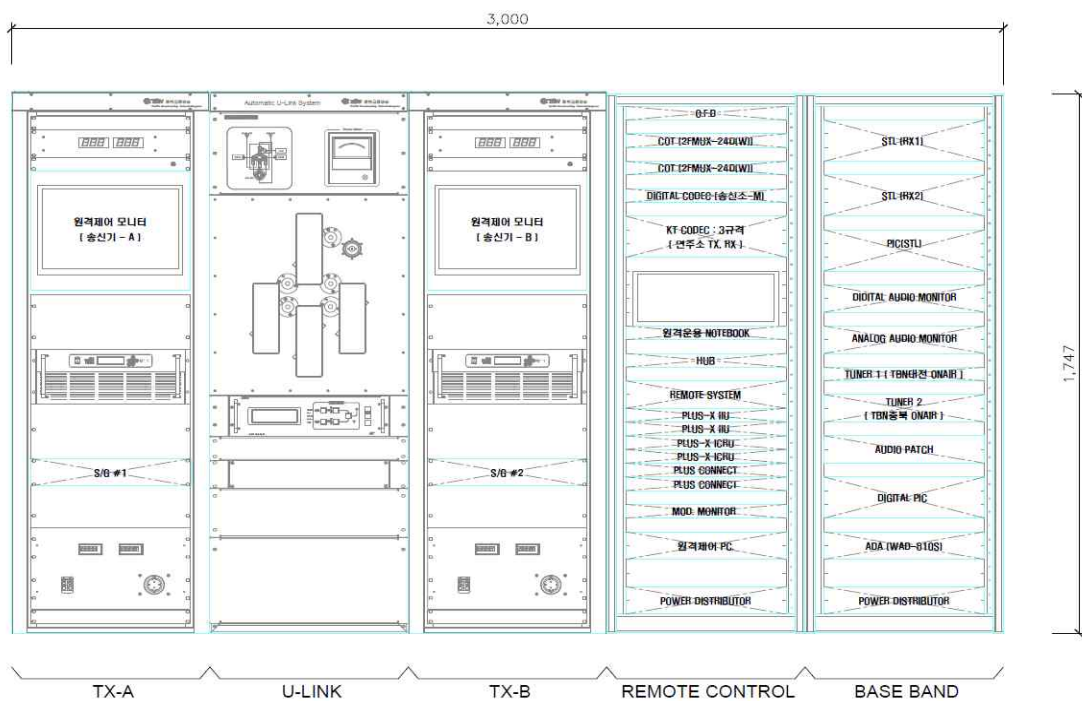


나. 기기배치도

< 송신소내 기기 배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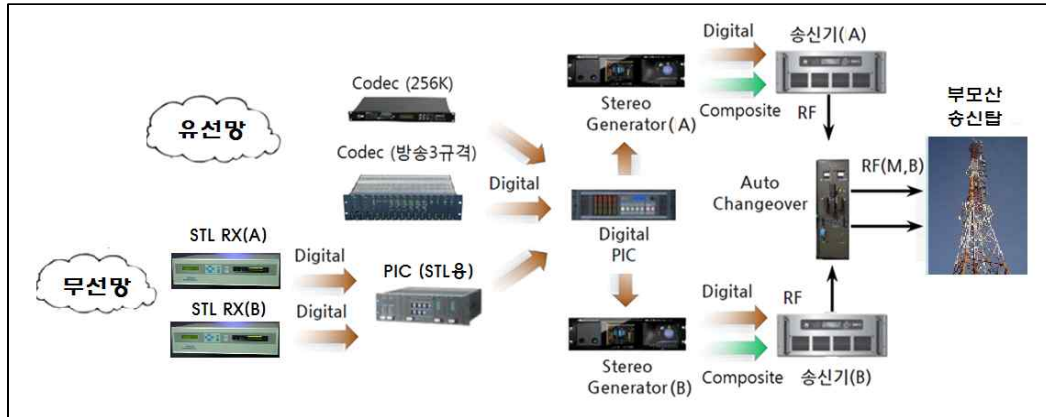


< 장비 배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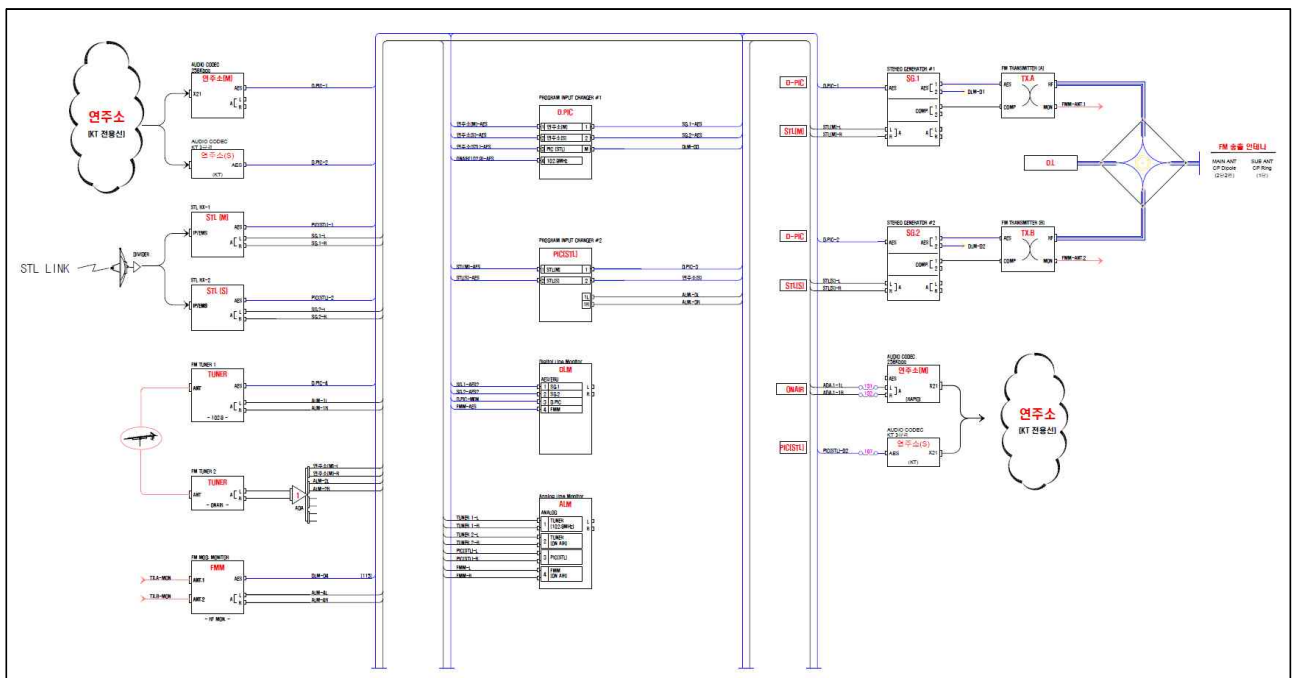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 유선망 : 주회선(256Kbps), 예비회선(방송3규격)
- 무선망 : 1.7GHz 대 STL 무선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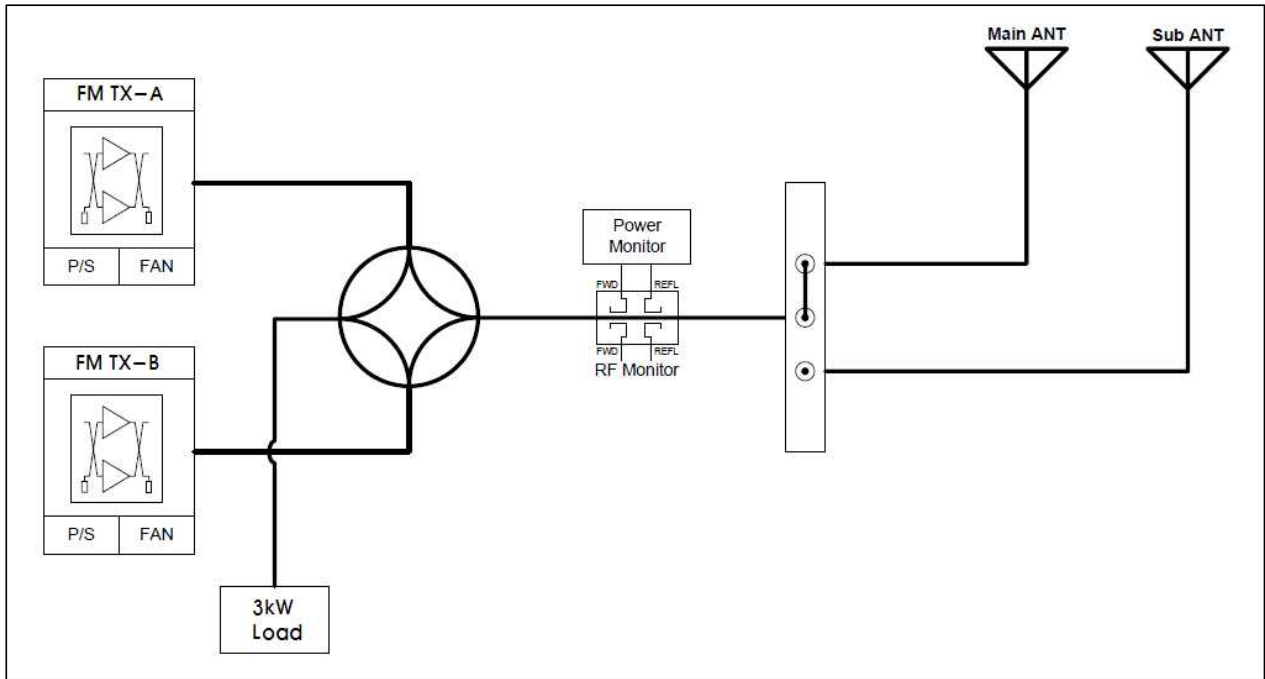


< 송신소 방송시스템 구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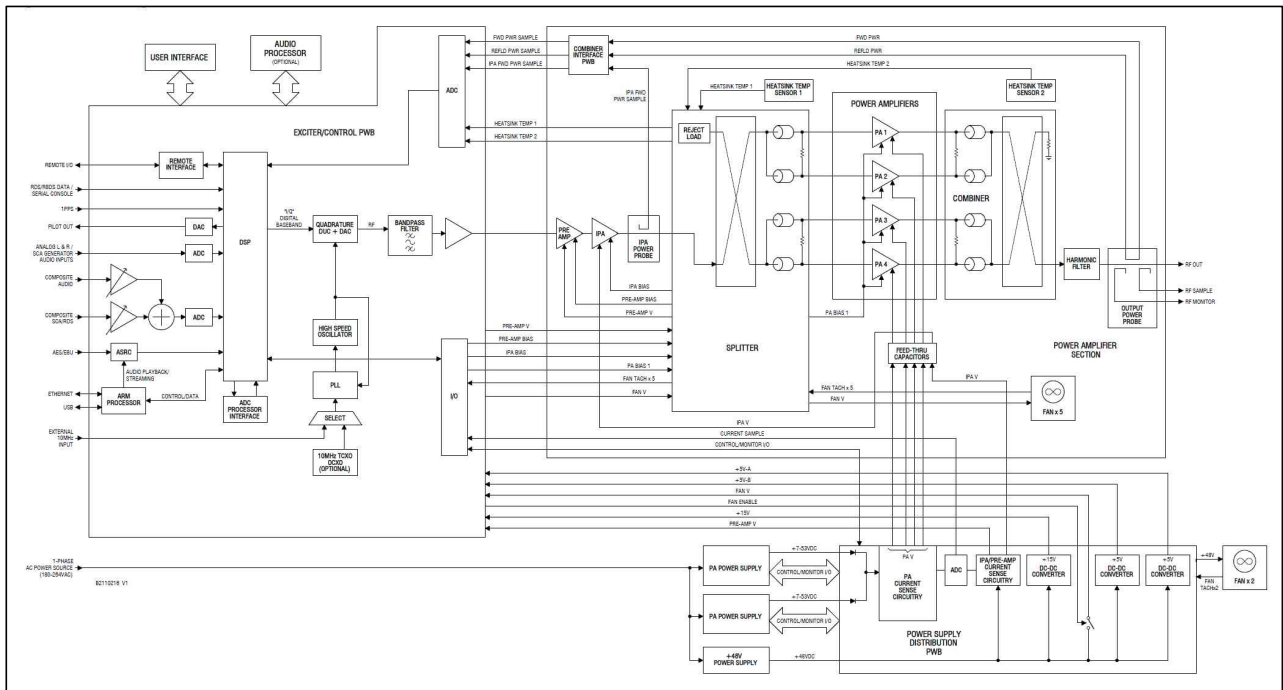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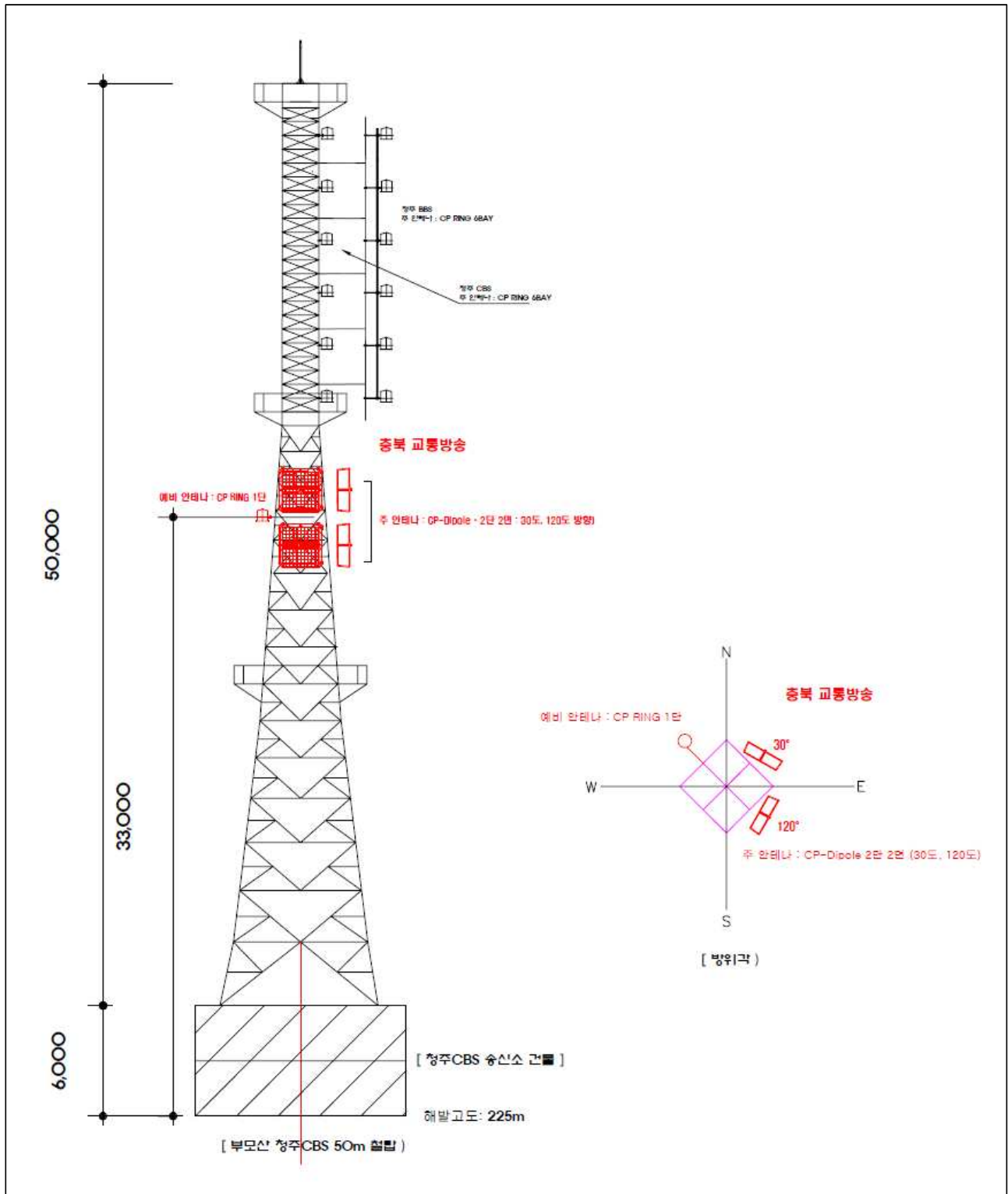
< FM송신기 구성도 >



< FM송신기 Block Diagra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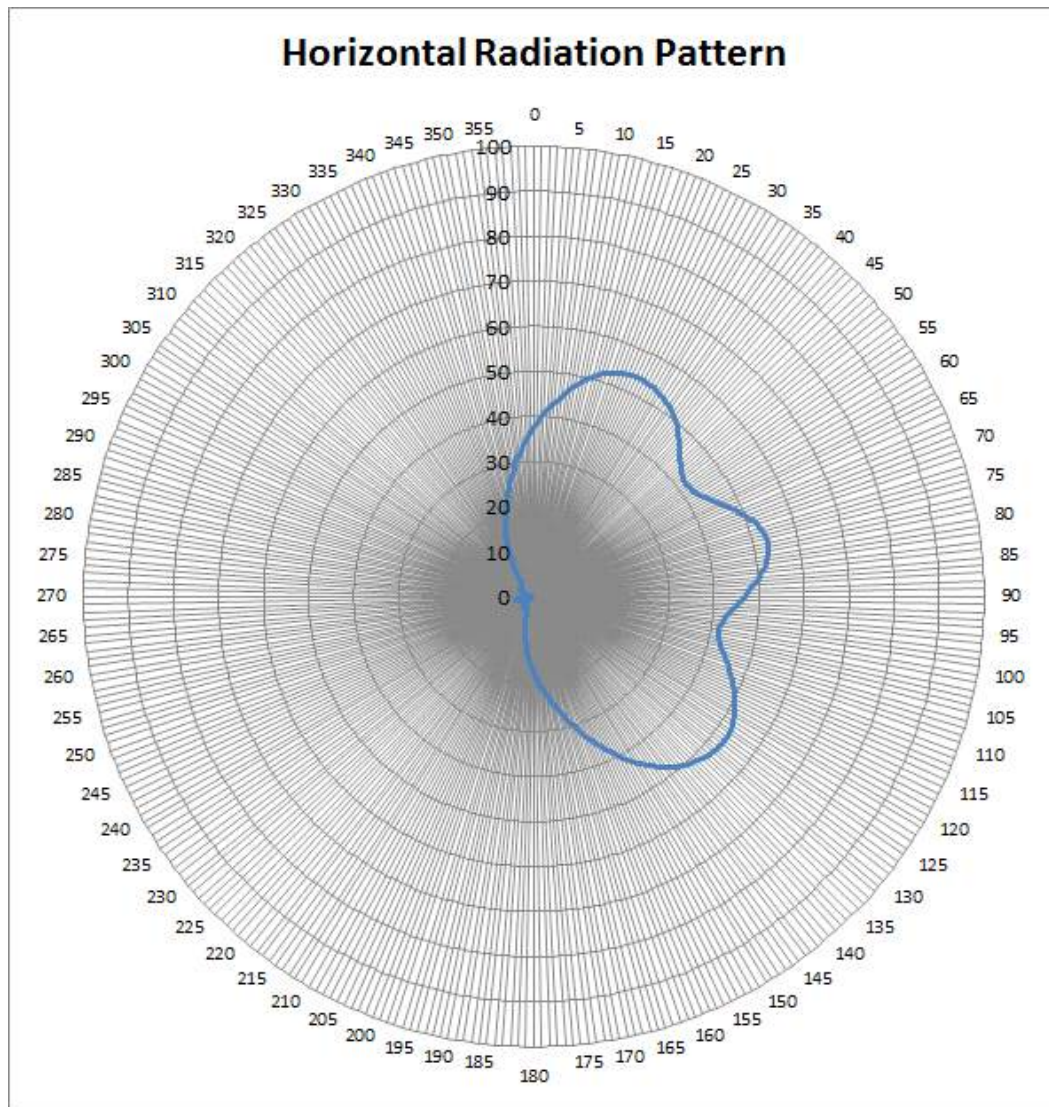
5. 안테나계 구성약도 (해발고도 ? m)



6. 송신안테나 지향특성도 **(매우 중요함)**

가. 주 안테나

○ 수평 방사 패턴



방 송 명		S I T E	
안테나명		단 수	
종합이득		송신점높이	
송신출력		안테나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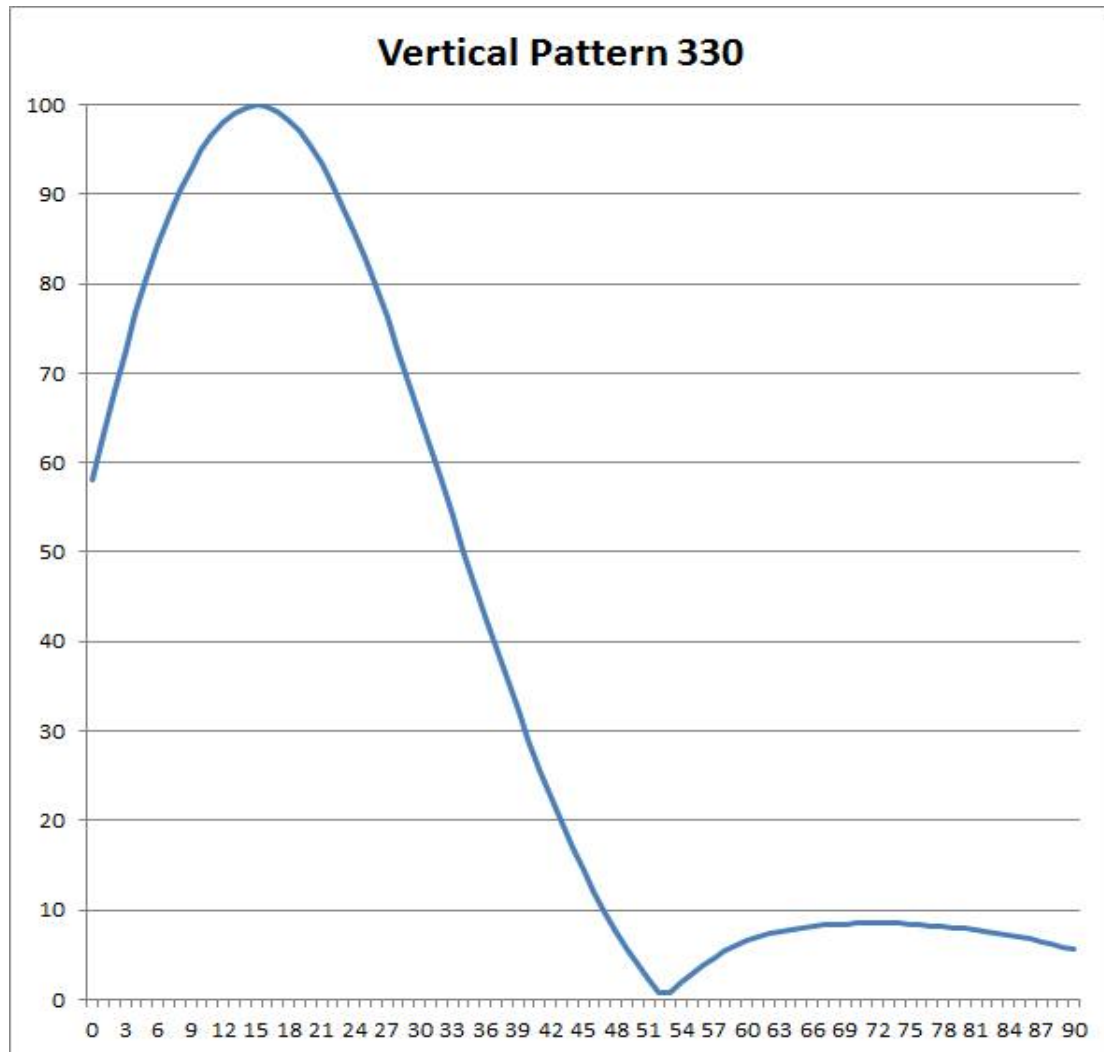
< 주 안테나 수평 방사 패턴 DATA >

각도	AMP(%)	Amp(dB)	각도	AMP(%)	Amp(dB)
0	37.62	-8.49	60	43.93	-7.14
1	38.56	-8.28	61	44.5	-7.03
2	39.5	-8.07	62	45.13	-6.91
3	40.42	-7.87	63	45.8	-6.78
4	41.34	-7.67	64	46.51	-6.65
5	42.25	-7.48	65	47.25	-6.51
6	43.15	-7.30	66	48.01	-6.37
7	44.04	-7.12	67	48.76	-6.24
8	44.92	-6.95	68	49.5	-6.11
9	45.79	-6.78	69	50.21	-5.98
10	46.64	-6.62	70	50.88	-5.87
11	47.47	-6.47	71	51.49	-5.77
12	48.27	-6.33	72	52.03	-5.67
13	49.03	-6.19	73	52.48	-5.60
14	49.76	-6.06	74	52.84	-5.54
15	50.43	-5.95	75	53.1	-5.50
16	51.05	-5.84	76	53.25	-5.47
17	51.61	-5.75	77	53.29	-5.47
18	52.1	-5.66	78	53.23	-5.48
19	52.53	-5.59	79	53.06	-5.50
20	52.89	-5.53	80	52.79	-5.55
21	53.18	-5.49	81	52.43	-5.61
22	53.41	-5.45	82	51.99	-5.68
23	53.57	-5.42	83	51.48	-5.77
24	53.68	-5.40	84	50.9	-5.87
25	53.73	-5.40	85	50.28	-5.97
26	53.73	-5.40	86	49.61	-6.09
27	53.69	-5.40	87	48.91	-6.21
28	53.62	-5.41	88	48.2	-6.34
29	53.5	-5.43	89	47.47	-6.47
30	53.35	-5.46	90	46.74	-6.61
31	53.16	-5.49	91	46.02	-6.74
32	52.94	-5.52	92	45.31	-6.88
33	52.67	-5.57	93	44.63	-7.01
34	52.36	-5.62	94	43.99	-7.13
35	52	-5.68	95	43.4	-7.25
36	51.59	-5.75	96	42.89	-7.35
37	51.13	-5.83	97	42.45	-7.44
38	50.6	-5.92	98	42.12	-7.51
39	50.02	-6.02	99	41.89	-7.56
40	49.39	-6.13	100	41.78	-7.58
41	48.71	-6.25	101	41.8	-7.58
42	48	-6.38	102	41.93	-7.55
43	47.26	-6.51	103	42.19	-7.50
44	46.51	-6.65	104	42.54	-7.42
45	45.77	-6.79	105	42.99	-7.33
46	45.07	-6.92	106	43.5	-7.23
47	44.4	-7.05	107	44.07	-7.12
48	43.8	-7.17	108	44.68	-7.00
49	43.27	-7.28	109	45.3	-6.88
50	42.84	-7.36	110	45.94	-6.76
51	42.5	-7.43	111	46.57	-6.64
52	42.26	-7.48	112	47.19	-6.52
53	42.13	-7.51	113	47.8	-6.41
54	42.11	-7.51	114	48.39	-6.30
55	42.19	-7.50	115	48.96	-6.20
56	42.37	-7.46	116	49.51	-6.11
57	42.64	-7.40	117	50.03	-6.02
58	42.99	-7.33	118	50.53	-5.93
59	43.42	-7.25	119	51	-5.85

각도	AMP(%)	Amp(dB)	각도	AMP(%)	Amp(dB)
120	51.42	-5.78	180	17.05	-15.37
121	51.81	-5.71	181	16.36	-15.72
122	52.14	-5.66	182	15.67	-16.10
123	52.43	-5.61	183	14.99	-16.48
124	52.66	-5.57	184	14.3	-16.89
125	52.83	-5.54	185	13.61	-17.32
126	52.94	-5.52	186	12.93	-17.77
127	52.98	-5.52	187	12.27	-18.22
128	52.97	-5.52	188	11.62	-18.70
129	52.91	-5.53	189	10.98	-19.19
130	52.79	-5.55	190	10.37	-19.68
131	52.62	-5.58	191	9.77	-20.20
132	52.41	-5.61	192	9.2	-20.72
133	52.16	-5.65	193	8.64	-21.27
134	51.87	-5.70	194	8.11	-21.82
135	51.54	-5.76	195	7.6	-22.38
136	51.18	-5.82	196	7.1	-22.97
137	50.77	-5.89	197	6.63	-23.57
138	50.33	-5.96	198	6.18	-24.18
139	49.84	-6.05	199	5.75	-24.81
140	49.31	-6.14	200	5.34	-25.45
141	48.74	-6.24	201	4.96	-26.09
142	48.12	-6.35	202	4.61	-26.73
143	47.45	-6.48	203	4.28	-27.37
144	46.75	-6.60	204	4	-27.96
145	46	-6.74	205	3.74	-28.54
146	45.22	-6.89	206	3.53	-29.04
147	44.41	-7.05	207	3.36	-29.47
148	43.58	-7.21	208	3.22	-29.84
149	42.72	-7.39	209	3.11	-30.14
150	41.85	-7.57	210	3.04	-30.34
151	40.97	-7.75	211	2.97	-30.54
152	40.08	-7.94	212	2.93	-30.66
153	39.19	-8.14	213	2.9	-30.75
154	38.29	-8.34	214	2.87	-30.84
155	37.38	-8.55	215	2.86	-30.87
156	36.47	-8.76	216	2.86	-30.87
157	35.55	-8.98	217	2.87	-30.84
158	34.63	-9.21	218	2.89	-30.78
159	33.7	-9.45	219	2.92	-30.69
160	32.77	-9.69	220	2.98	-30.52
161	31.83	-9.94	221	3.03	-30.37
162	30.9	-10.20	222	3.09	-30.20
163	29.96	-10.47	223	3.16	-30.01
164	29.04	-10.74	224	3.21	-29.87
165	28.14	-11.01	225	3.25	-29.76
166	27.25	-11.29	226	3.26	-29.74
167	26.39	-11.57	227	3.25	-29.76
168	25.56	-11.85	228	3.19	-29.92
169	24.75	-12.13	229	3.09	-30.20
170	23.97	-12.41	230	2.95	-30.60
171	23.22	-12.68	231	2.77	-31.15
172	22.49	-12.96	232	2.54	-31.90
173	21.79	-13.23	233	2.28	-32.84
174	21.1	-13.51	234	2	-33.98
175	20.42	-13.80	235	1.7	-35.39
176	19.74	-14.09	236	1.4	-37.08
177	19.07	-14.39	237	1.09	-39.25
178	18.4	-14.70	238	0.8	-41.94
179	17.72	-15.03	239	0.54	-45.35

각도	AMP(%)	Amp(dB)	각도	AMP(%)	Amp(dB)
240	0.34	-49.37	301	3.69	-28.66
241	0.32	-49.90	302	3.67	-28.71
242	0.49	-46.20	303	3.64	-28.78
243	0.72	-42.85	304	3.59	-28.90
244	0.96	-40.35	305	3.55	-29.00
245	1.23	-38.20	306	3.5	-29.12
246	1.5	-36.48	307	3.46	-29.22
247	1.8	-34.89	308	3.43	-29.29
248	2.1	-33.56	309	3.41	-29.34
249	2.41	-32.36	310	3.4	-29.37
250	2.73	-31.28	311	3.41	-29.34
251	3.03	-30.37	312	3.43	-29.29
252	3.32	-29.58	313	3.48	-29.17
253	3.58	-28.92	314	3.54	-29.02
254	3.8	-28.40	315	3.63	-28.80
255	3.97	-28.02	316	3.75	-28.52
256	4.07	-27.81	317	3.91	-28.16
257	4.12	-27.70	318	4.11	-27.72
258	4.12	-27.70	319	4.37	-27.19
259	4.04	-27.87	320	4.69	-26.58
260	3.91	-28.16	321	5.06	-25.92
261	3.74	-28.54	322	5.5	-25.19
262	3.54	-29.02	323	6	-24.44
263	3.31	-29.60	324	6.56	-23.66
264	3.06	-30.29	325	7.16	-22.90
265	2.82	-31.00	326	7.8	-22.16
266	2.59	-31.73	327	8.48	-21.43
267	2.35	-32.58	328	9.19	-20.73
268	2.14	-33.39	329	9.92	-20.07
269	1.93	-34.29	330	10.66	-19.44
270	1.73	-35.24	331	11.42	-18.85
271	1.53	-36.31	332	12.18	-18.29
272	1.33	-37.52	333	12.95	-17.75
273	1.12	-39.02	334	13.72	-17.25
274	0.9	-40.92	335	14.49	-16.78
275	0.68	-43.35	336	15.27	-16.32
276	0.46	-46.74	337	16.05	-15.89
277	0.31	-50.17	338	16.84	-15.47
278	0.34	-49.37	339	17.64	-15.07
279	0.53	-45.51	340	18.45	-14.68
280	0.77	-42.27	341	19.27	-14.30
281	1.01	-39.91	342	20.11	-13.93
282	1.25	-38.06	343	20.97	-13.57
283	1.47	-36.65	344	21.85	-13.21
284	1.68	-35.49	345	22.75	-12.86
285	1.88	-34.52	346	23.68	-12.51
286	2.06	-33.72	347	24.63	-12.17
287	2.22	-33.07	348	25.6	-11.84
288	2.38	-32.47	349	26.6	-11.50
289	2.54	-31.90	350	27.6	-11.18
290	2.69	-31.40	351	28.61	-10.87
291	2.84	-30.93	352	29.64	-10.56
292	2.99	-30.49	353	30.66	-10.27
293	3.14	-30.06	354	31.68	-9.98
294	3.27	-29.71	355	32.7	-9.71
295	3.39	-29.40	356	33.71	-9.44
296	3.49	-29.14	357	34.71	-9.19
297	3.58	-28.92	358	35.69	-8.95
298	3.64	-28.78	359	36.66	-8.72
299	3.67	-28.71			
300	3.69	-28.66			

○ 수직 방사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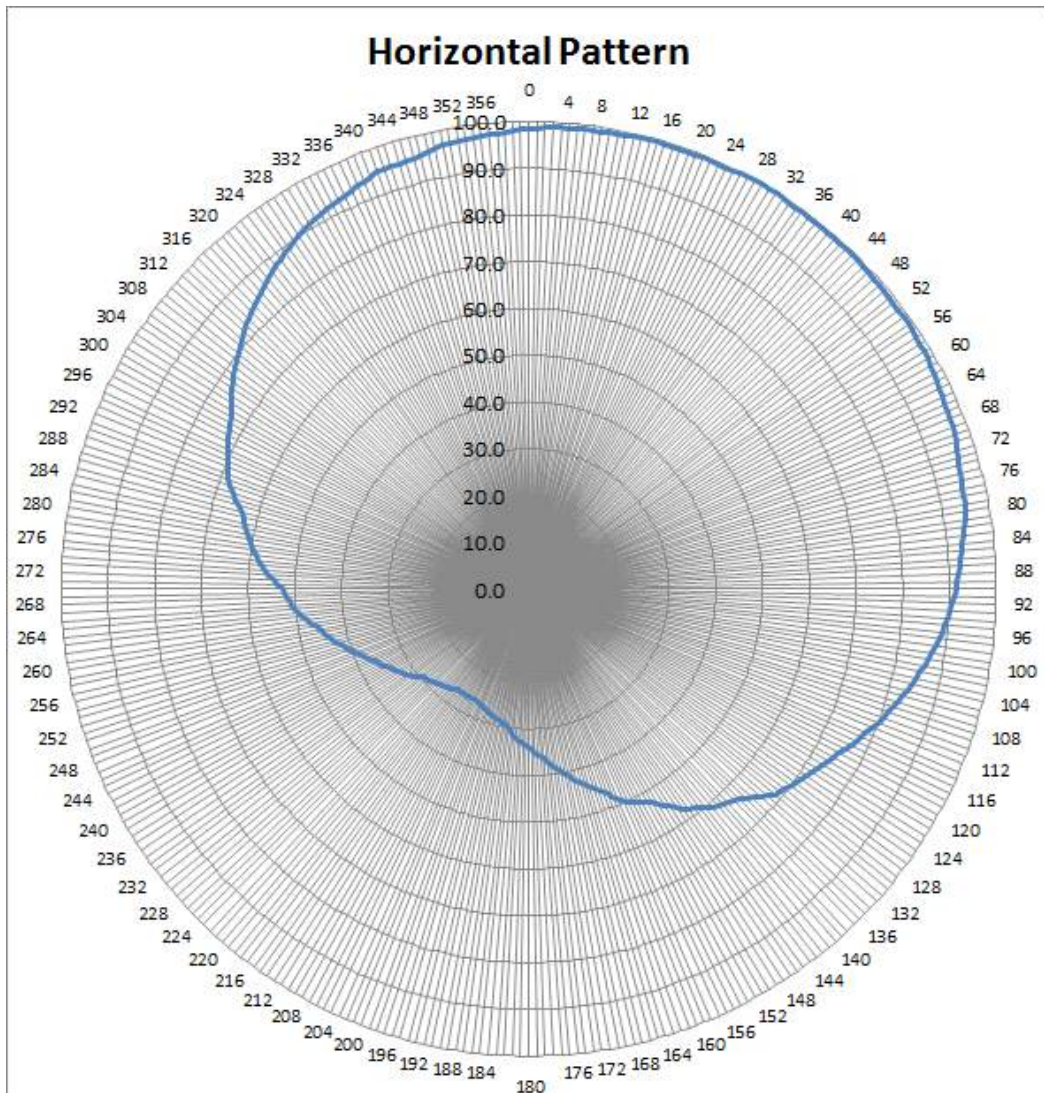
방 송 명		S I T E	
안테나명		단 수	
종합이득		송신점높이	
송신출력		안테나방향	

< 수직 방사 패턴 DATA >

각도	AMP(%)	Amp(dB)	각도	AMP(%)	Amp(dB)
00	58.17	-4.71	46	11.98	-18.43
01	63.22	-3.98	47	9.69	-20.27
02	68.05	-3.34	48	7.57	-22.42
03	72.61	-2.78	49	5.61	-25.02
04	76.83	-2.29	50	3.81	-28.38
05	80.73	-1.86	51	2.17	-33.27
06	84.32	-1.48	52	0.68	-43.35
07	87.51	-1.16	53	0.67	-43.48
08	90.37	-0.88	54	1.87	-34.56
09	92.88	-0.64	55	2.94	-30.63
10	94.99	-0.45	56	3.89	-28.20
11	96.75	-0.29	57	4.71	-26.54
12	98.13	-0.16	58	5.42	-25.32
13	99.11	-0.08	59	6.03	-24.39
14	99.72	-0.02	60	6.55	-23.68
15	100	0.00	61	6.98	-23.12
16	99.79	-0.02	62	7.33	-22.70
17	99.25	-0.07	63	7.62	-22.36
18	98.34	-0.15	64	7.85	-22.10
19	97.04	-0.26	65	8.04	-21.89
20	95.39	-0.41	66	8.19	-21.73
21	93.48	-0.59	67	8.3	-21.62
22	91.16	-0.80	68	8.39	-21.52
23	88.59	-1.05	69	8.46	-21.45
24	85.8	-1.33	70	8.51	-21.40
25	82.76	-1.64	71	8.54	-21.37
26	79.53	-1.99	72	8.55	-21.36
27	76.16	-2.37	73	8.54	-21.37
28	72.65	-2.78	74	8.51	-21.40
29	69.03	-3.22	75	8.45	-21.46
30	65.37	-3.69	76	8.37	-21.55
31	61.62	-4.21	77	8.27	-21.65
32	57.86	-4.75	78	8.16	-21.77
33	54.09	-5.34	79	8.04	-21.89
34	50.33	-5.96	80	7.89	-22.06
35	46.61	-6.63	81	7.74	-22.23
36	42.93	-7.34	82	7.57	-22.42
37	39.32	-8.11	83	7.39	-22.63
38	35.78	-8.93	84	7.2	-22.85
39	32.35	-9.80	85	6.99	-23.11
40	29.02	-10.75	86	6.76	-23.40
41	25.81	-11.76	87	6.5	-23.74
42	22.74	-12.86	88	6.22	-24.12
43	19.82	-14.06	89	5.91	-24.57
44	17.04	-15.37	90	5.57	-25.08
45	14.43	-16.81			

나. 예비 안테나

○ 수평 방사 패턴



방 송 명		S I T E	
안테나명		단 수	
종합이득		송신점 높이	
송신출력		안테나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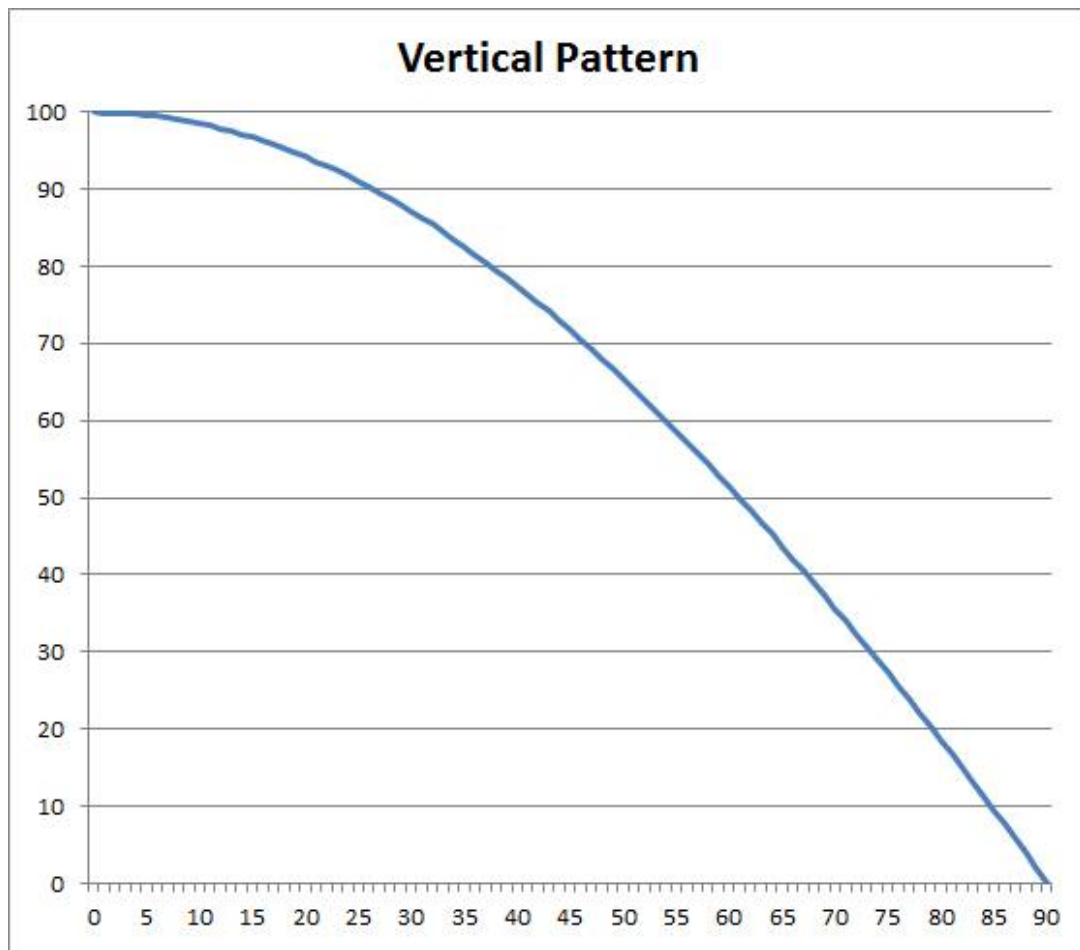
< 주 안테나 수평 방사 패턴 DATA >

각도	AMP(%)	Amp(dB)	각도	AMP(%)	Amp(dB)
0	98.5	-0.13	60	98.5	-0.13
1	98.6	-0.12	61	98.3	-0.15
2	98.7	-0.11	62	98.1	-0.17
3	98.8	-0.10	63	97.9	-0.18
4	98.9	-0.10	64	97.7	-0.20
5	99.0	-0.09	65	97.5	-0.22
6	99.0	-0.09	66	97.4	-0.23
7	99.0	-0.09	67	97.3	-0.24
8	99.0	-0.09	68	97.2	-0.25
9	99.0	-0.09	69	97.1	-0.26
10	99.0	-0.09	70	97.0	-0.26
11	99.1	-0.08	71	96.7	-0.29
12	99.2	-0.07	72	96.4	-0.32
13	99.3	-0.06	73	96.0	-0.35
14	99.4	-0.05	74	95.7	-0.38
15	99.5	-0.04	75	95.4	-0.41
16	99.5	-0.04	76	95.3	-0.42
17	99.5	-0.04	77	95.2	-0.43
18	99.5	-0.04	78	95.1	-0.44
19	99.5	-0.04	79	95.0	-0.45
20	99.5	-0.04	80	94.9	-0.45
21	99.5	-0.04	81	94.5	-0.49
22	99.5	-0.04	82	94.1	-0.53
23	99.5	-0.04	83	93.7	-0.57
24	99.5	-0.04	84	93.3	-0.60
25	99.5	-0.04	85	92.9	-0.64
26	99.6	-0.03	86	92.6	-0.67
27	99.7	-0.03	87	92.3	-0.70
28	99.8	-0.02	88	92.0	-0.72
29	99.9	-0.01	89	91.7	-0.75
30	100.0	0.00	90	91.4	-0.78
31	99.9	-0.01	91	91.0	-0.82
32	99.8	-0.02	92	90.6	-0.86
33	99.7	-0.03	93	90.1	-0.90
34	99.6	-0.03	94	89.7	-0.94
35	99.5	-0.04	95	89.3	-0.98
36	99.5	-0.04	96	88.8	-1.03
37	99.5	-0.04	97	88.3	-1.08
38	99.5	-0.04	98	87.8	-1.13
39	99.5	-0.04	99	87.3	-1.18
40	99.5	-0.04	100	86.8	-1.23
41	99.5	-0.04	101	86.2	-1.29
42	99.5	-0.04	102	85.6	-1.35
43	99.5	-0.04	103	85.0	-1.41
44	99.5	-0.04	104	84.4	-1.47
45	99.5	-0.04	105	83.8	-1.54
46	99.4	-0.05	106	83.2	-1.60
47	99.3	-0.06	107	82.6	-1.66
48	99.2	-0.07	108	81.9	-1.73
49	99.1	-0.08	109	81.3	-1.80
50	99.0	-0.09	110	80.7	-1.86
51	99.0	-0.09	111	80.0	-1.94
52	99.0	-0.09	112	79.3	-2.01
53	99.0	-0.09	113	78.6	-2.09
54	99.0	-0.09	114	77.9	-2.17
55	99.0	-0.09	115	77.2	-2.25
56	98.9	-0.10	116	76.5	-2.33
57	98.8	-0.10	117	75.8	-2.41
58	98.7	-0.11	118	75.0	-2.49
59	98.6	-0.12	119	74.3	-2.58

각도	AMP(%)	Amp(dB)	각도	AMP(%)	Amp(dB)
120	73.6	-2.66	180	34.0	-9.37
121	73.1	-2.72	181	33.6	-9.47
122	72.6	-2.78	182	33.2	0.50
123	72.1	-2.84	183	32.8	-9.68
124	71.6	-2.90	184	32.4	-9.79
125	71.1	-2.96	185	32.0	-9.90
126	70.6	-3.03	186	31.5	-10.04
127	70.1	-3.09	187	31.0	-10.18
128	69.5	-3.16	188	30.4	-10.33
129	69.0	-3.22	189	29.9	-10.48
130	68.5	-3.29	190	29.4	-10.63
131	67.5	-3.41	191	29.2	-10.69
132	66.5	-3.54	192	29.0	-10.75
133	65.5	-3.68	193	28.8	-10.81
134	64.5	-3.81	194	28.6	-10.87
135	63.5	-3.94	195	28.4	-10.93
136	63.0	-4.02	196	28.2	-11.00
137	62.5	-4.09	197	28.0	-11.06
138	61.9	-4.16	198	27.8	-11.12
139	61.4	-4.23	199	27.6	-11.18
140	60.9	-4.31	200	27.4	-11.24
141	60.2	-4.41	201	27.2	-11.31
142	59.5	-4.51	202	27.0	-11.37
143	58.8	-4.61	203	26.8	-11.44
144	58.1	-4.72	204	26.6	-11.50
145	57.4	-4.82	205	26.4	-11.57
146	56.5	-4.96	206	26.4	-11.57
147	55.6	-5.10	207	26.4	-11.57
148	54.6	-5.25	208	26.4	-11.57
149	53.7	-5.40	209	26.4	-11.57
150	52.8	-5.55	210	26.4	-11.57
151	52.3	-5.63	211	26.4	-11.57
152	51.8	-5.71	212	26.4	-11.57
153	51.3	-5.80	213	26.4	-11.57
154	50.8	-5.88	214	26.4	-11.57
155	50.3	-5.97	215	26.4	-11.57
156	49.5	-6.11	216	26.6	-11.50
157	48.7	-6.26	217	26.8	-11.44
158	47.8	-6.40	218	27.0	-11.37
159	47.0	-6.55	219	27.2	-11.31
160	46.2	-6.71	220	27.4	-11.24
161	45.6	-6.82	221	27.6	-11.18
162	45.0	-6.94	222	27.8	-11.12
163	44.3	-7.06	223	28.0	-11.06
164	43.7	-7.19	224	28.2	-11.00
165	43.1	-7.31	225	28.4	-10.93
166	42.4	-7.45	226	28.6	-10.87
167	41.7	-7.60	227	28.8	-10.81
168	41.0	-7.74	228	29.0	-10.75
169	40.3	-7.89	229	29.2	-10.69
170	39.6	-8.05	230	29.4	-10.63
171	39.0	-8.18	231	29.9	-10.48
172	38.4	-8.32	232	30.4	-10.33
173	37.7	-8.46	233	31.0	-10.18
174	37.1	-8.61	234	31.5	-10.04
175	36.5	-8.75	235	32.0	-9.90
176	36.0	-8.87	236	32.4	-9.79
177	35.5	-9.00	237	32.8	-9.68
178	35.0	-9.12	238	33.2	-9.58
179	34.5	-9.24	239	33.6	-9.47

각도	AMP(%)	Amp(dB)	각도	AMP(%)	Amp(dB)
240	34.0	-9.37	301	74.3	-2.58
241	34.5	-9.24	302	75.0	-2.49
242	35.0	-9.12	303	75.8	-2.41
243	35.5	-9.00	304	76.5	-2.33
244	36.0	-8.87	305	77.2	-2.25
245	36.5	-8.75	306	77.9	-2.17
246	37.1	-8.61	307	78.6	-2.09
247	37.7	-8.46	308	79.3	-2.01
248	38.4	-8.32	309	80.0	-1.94
249	39.0	-8.18	310	80.7	-1.86
250	39.6	-8.05	311	81.3	-1.80
251	40.3	-7.89	312	81.9	-1.73
252	41.0	-7.74	313	82.6	-1.66
253	41.7	-7.60	314	83.2	-1.60
254	42.4	-7.45	315	83.8	-1.54
255	43.1	-7.31	316	84.4	-1.47
256	43.7	-7.19	317	85.0	-1.41
257	44.3	-7.06	318	85.6	-1.35
258	45.0	-6.94	319	86.2	-1.29
259	45.6	-6.82	320	86.8	-1.23
260	46.2	-6.71	321	87.3	-1.18
261	47.0	-6.55	322	87.8	-1.13
262	47.8	-6.40	323	88.3	-1.08
263	48.7	-6.26	324	88.8	-1.03
264	49.5	-6.11	325	89.3	-0.98
265	50.3	-5.97	326	89.7	-0.94
266	50.8	-5.88	327	90.1	-0.90
267	51.3	-5.80	328	90.6	-0.86
268	51.8	-5.71	329	91.0	-0.82
269	52.3	-5.63	330	91.4	-0.78
270	52.8	-5.55	331	91.7	-0.75
271	53.7	-5.40	332	92.0	-0.72
272	54.6	-5.25	333	92.3	-0.70
273	55.6	-5.10	334	92.6	-0.67
274	56.5	-4.96	335	92.9	-0.64
275	57.4	-4.82	336	93.3	-0.60
276	58.1	-4.72	337	93.7	-0.57
277	58.8	-4.61	338	94.1	-0.53
278	59.5	-4.51	339	94.5	-0.49
279	60.2	-4.41	340	94.9	-0.45
280	60.9	-4.31	341	95.0	-0.45
281	61.4	-4.23	342	95.1	-0.44
282	61.9	-4.16	343	95.2	-0.43
283	62.5	-4.09	344	95.3	-0.42
284	63.0	-4.02	345	95.4	-0.41
285	63.5	-3.94	346	95.7	-0.38
286	64.5	-3.81	347	96.0	-0.35
287	65.5	-3.68	348	96.4	-0.32
288	66.5	-3.54	349	96.7	-0.29
289	67.5	-3.41	350	97.0	-0.26
290	68.5	-3.29	351	97.1	-0.26
291	69.0	-3.22	352	97.2	-0.25
292	69.5	-3.16	353	97.3	-0.24
293	70.1	-3.09	354	97.4	-0.23
294	70.6	-3.03	355	97.5	-0.22
295	71.1	-2.96	356	97.7	-0.20
296	71.6	-2.90	357	97.9	-0.18
297	72.1	-2.84	358	98.1	-0.17
298	72.6	-2.78	359	98.3	-0.15
299	73.1	-2.72			
300	73.6	-2.66			

○ 수직 방사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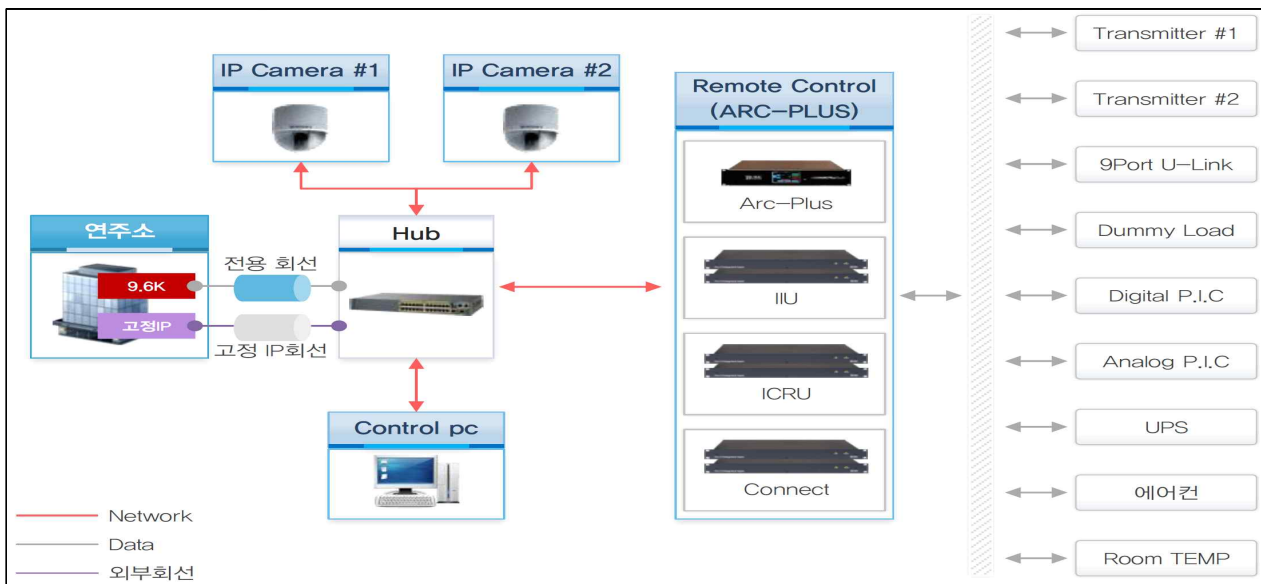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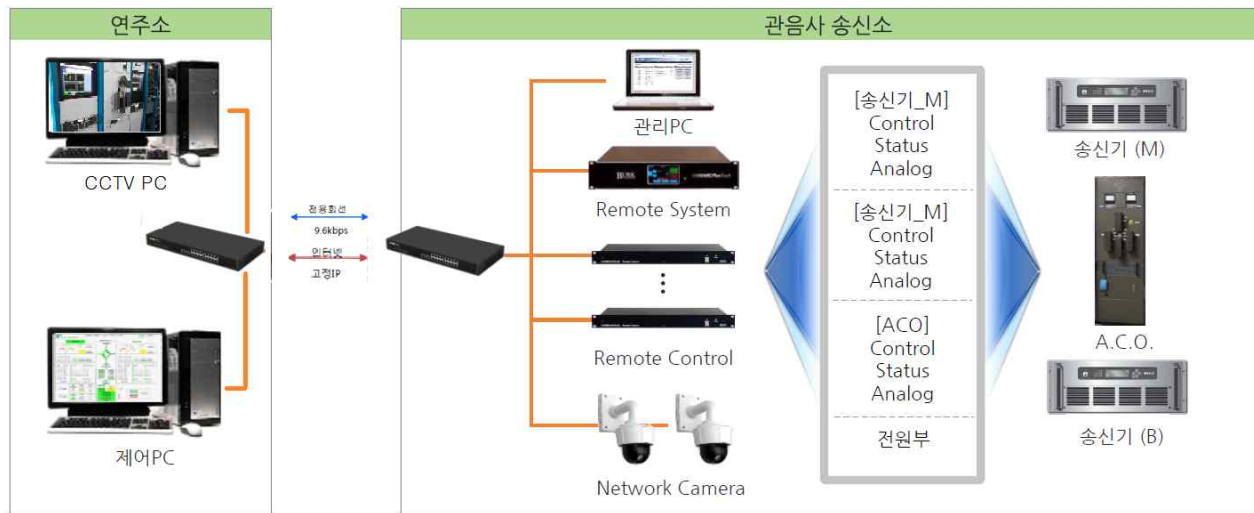


방 송 명		S I T E	
안테나명		단 수	
종합이득		송신점높이	
송신출력		안테나방향	

< 수직 방사 패턴 DATA >

각도	AMP(%)	Amp(dB)	각도	AMP(%)	Amp(dB)
00	100	0.00	46	70.5	-3.04
01	99.9	-0.01	47	69.3	-3.19
02	99.9	-0.01	48	68	-3.35
03	99.9	-0.01	49	66.7	-3.52
04	99.8	-0.02	50	65.4	-3.69
05	99.6	-0.03	51	64.1	-3.86
06	99.5	-0.04	52	62.8	-4.04
07	99.3	-0.06	53	61.4	-4.24
08	99.1	-0.08	54	60	-4.44
09	98.8	-0.10	55	58.6	-4.64
10	98.5	-0.13	56	57.2	-4.85
11	98.2	-0.16	57	55.8	-5.07
12	97.9	-0.18	58	54.4	-5.29
13	97.5	-0.22	59	52.9	-5.53
14	97.1	-0.26	60	51.4	-5.78
15	96.7	-0.29	61	49.9	-6.04
16	96.3	-0.33	62	48.4	-6.30
17	95.8	-0.37	63	46.9	-6.58
18	95.3	-0.42	64	45.3	-6.88
19	94.8	-0.46	65	43.7	-7.19
20	94.2	-0.52	66	42.2	-7.49
21	93.6	-0.57	67	40.6	-7.83
22	93	-0.63	68	39	-8.18
23	92.4	-0.69	69	37.3	-8.57
24	91.7	-0.75	70	35.7	-8.95
25	91	-0.82	71	34.1	-9.34
26	90.3	-0.89	72	32.4	-9.79
27	89.5	-0.96	73	30.7	-10.26
28	88.7	-1.04	74	29	-10.75
29	87.9	-1.12	75	27.3	-11.28
30	87.1	-1.20	76	25.6	-11.84
31	86.2	-1.29	77	23.9	-12.43
32	85.4	-1.37	78	22.1	-13.11
33	84.5	-1.46	79	20.4	-13.81
34	83.5	-1.57	80	18.6	-14.61
35	82.6	-1.66	81	16.8	-15.49
36	81.6	-1.77	82	15.1	-16.42
37	80.6	-1.87	83	13.3	-17.52
38	79.6	-1.98	84	11.4	-18.86
39	78.5	-2.10	85	9.6	-20.35
40	77.4	-2.23	86	7.8	-22.16
41	76.3	-2.35	87	5.9	-24.58
42	75.2	-2.48	88	4	-27.96
43	74.1	-2.60	89	2.1	-33.56
44	72.9	-2.75	90	0.01	-80.00
45	71.7	-2.89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 원격제어 및 감시 항목 >

불임으로 작성

기 재 요 령

1. 제①란 (1): 중파방송, 초단파방송 송신의 표준방식(모노포닉 또는 스테레오 포닉방송) 또는 TV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TV 음성다중방송)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제①란 (2): 송신기가 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 "예비" "영상" 또는 "음성" 과 같이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 공사설계의 내용이 동일한 장치에 대하여 일괄하여 기재(제조번호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제①란 (3): 중파방송 및 단파방송의 경우에는 반송파전력을, 초단파방송의 경우에는 평균전력을, 디지털TV방송은 평균전력을 기재합니다.
4. 제①란 (4): 초단파방송 및 TV방송의 경우에는 출력, 이득, 손실을 고려한 전력을 기재합니다.
5. 제①란 (11): 방송파 직접 수신중계방식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6. 제①란 (12): 주파수권이 역제장치의 명칭을 기재하되 송신기와 동일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장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7. 제①란 (14), (15), (16), (20), (21), (22) 및 제②란 (4), (5), (6) : 허가신청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신고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8. 제②란 (4): 다른 방송국 또는 방송보조국의 전파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경우에는 수신채널 및 수신사이트명을 기재합니다.
9. 제③란 (1) 내지 (7):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구분 기재합니다.
10. 제③란 (3): 상대이득 또는 절대이득을 기재합니다.(지향성안테나일 때에는 최대지향방향의 이득).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단소수직안테나(Short Vertical Antenna)을 기준으로 한 이득을 기재합니다.
※ 단소수직안테나: 원전도체면상에 설치된 1/4파장보다도 매우 짧고 손실이 없는 접지 안테나
11. 제③란 (4) 및 (5): 안테나 복사체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기재.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4)에 복사체의 높이를 기재합니다.
예) 지상고: 지상에서 안테나 중심부까지의 높이 해발고: 해면에서 안테나 중심까지의 높이
12. 제③란 (6): 지향성안테나의 경우에는 지향성을 주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13. 제④란: 송신안테나계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4. 제⑤란: 레코드플레이어·테이프레코더·비디오레코더·스튜디오카메라·필름카메라·필름투사기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5. 제⑥란: 제한증폭기·조정증폭기·전치증폭기·카메라제어장치·동기신호 발생장치·혼합증폭기·안정증폭기·스테레오 제네레이터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6. 제⑦란 (5): 전원설비를 다른 방송국과 공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명과 공용 한다는 뜻을 기재합니다.
17. 제⑧란: 라디얼스일 때에는 접지선수·길이 및 깊이를, 심굴접지일 때에는 면적·매수 및 깊이와 각각 접지저항을 기재합니다.
18. 제⑨란: 안테나설치대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9. 제⑨란 (2): 건축물(건물)의 높이를 제외한 안테나 전체높이 값을 기재합니다.
20. 제⑨란 (3): 기부지상고는 건축물(건물)이 높이를 포함한 높이를 기재합니다.
예) 건물+안테나
21. 제⑩란 (4), (5), (6), (7)란: 경보·감시 또는 제어하는 장소가 경보감시 또는 제어대상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22. 제⑩란: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속에 ○표를 합니다.
23. 제⑫란 (1): 5만분의 1지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4. 제⑫란 (2): 국사·부속사·안테나 등의 개요를 기재하고, 안테나부근의 인접무선국 및 전파장애시설물을 표시합니다.
25. 제⑫란 (3): 중계망의 구성과 방식을 기재합니다.
26. 제⑫란 (4): 각단의 용도, 진공관(반도체)의 명칭주파수 및 전원전압 등을 기재합니다.
허가신청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신고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27. 제⑫란 (5)
 - 안테나설치대 안테나공용장치 및 급전선공용장치를 포함하고, 안테나복사체의 형상및 크기와 복수의 복사체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 복사체에 공급되는 전력비 및 전류의 위상을 함께 기재합니다.
 - 안테나의 취부상황을 평면도(방위표시) 및 측면도로 작성합니다.
28. 제⑫란 (6): 수평면 및 수직면의 지향특성도를 각각 작성하고 1도 단위로 안테나 방사전력의 수직, 수평값을 제출합니다.

Ⅲ. 시설설치계획서

I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방송국 설립 목적을 간단하게 기술

1. 방송국 설립계획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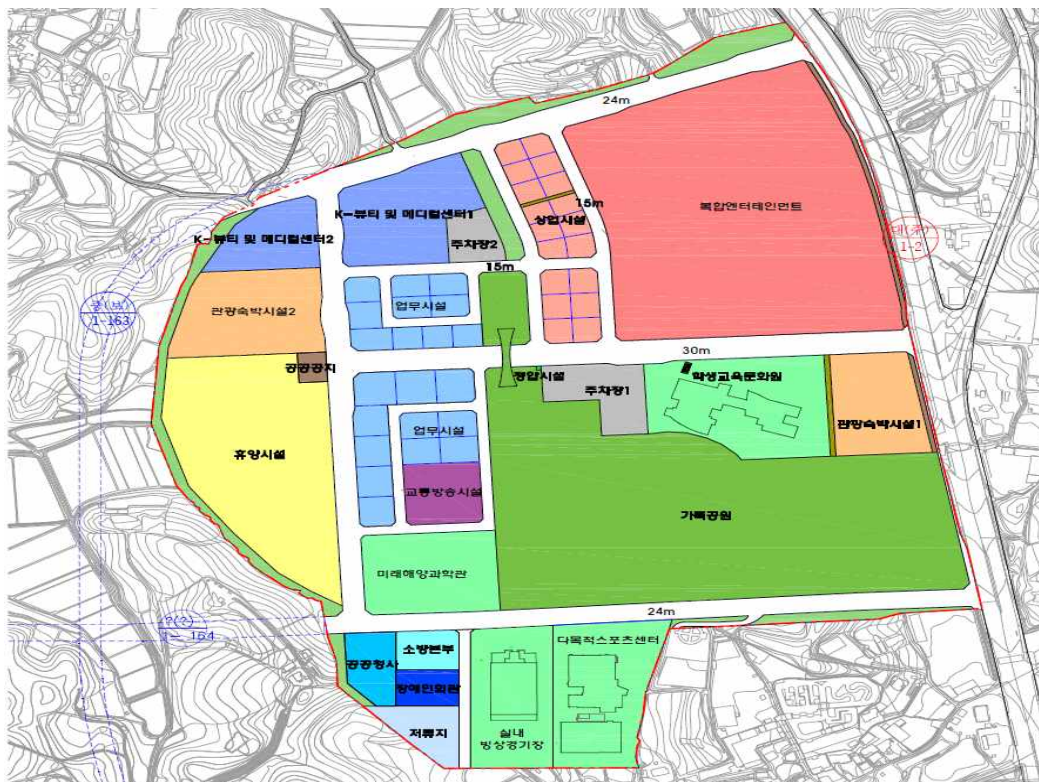
가. 연주소

1) 연주소 부지 : 00시 00건물 내

○ 주소 : 00북도 00시 00동 12-5

(동경 : 도 분 초, 북위 : 도 분 초)

< 연주소 위치도 >



나. 방송청사 내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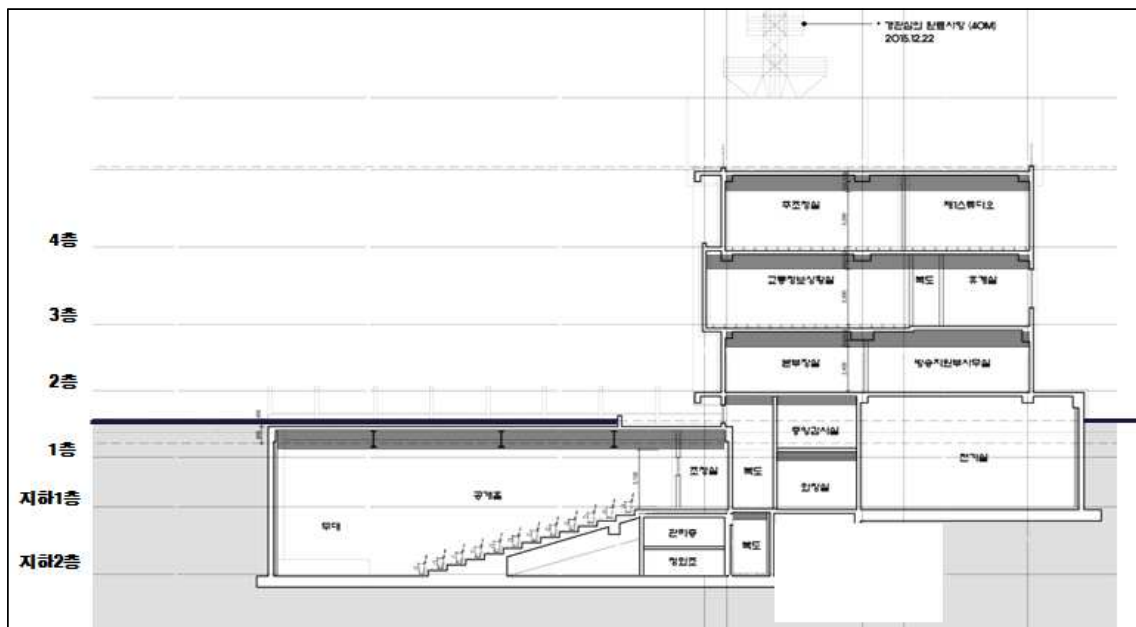
대지면적 : 00㎡(00평)

- 연면적 : 00㎡(00평)

〈 방송청사 조감도) 〉



〈 방송청사 단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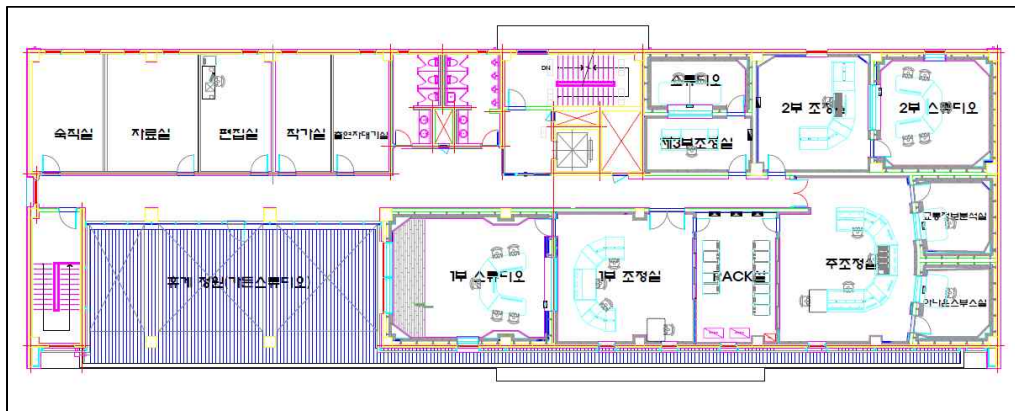
< 방송청사 연 면적 >

층 별	방송용도	사무용도	공유면적	비고
4층	주, 부조정실, 스튜디오, 편집실	자료실, 출연자대기실, 작가실		756.29㎡ (229평)
3층		편성제작국, 방송기술국, 소회의실	통신실, UPS실	925.92㎡ (281평)
1층		로비, 경비실, 환경미화원실	중앙감시실	362.86㎡ (110평)

다. 방송청사 설계 (예시)

○ 방송청사 평면도

< 1층 평면도 >



< 2층 평면도 >



2. 방송청사 주요 시설 (예시)

〈 청사 주요 시설 〉

구분	제작시설	용도	비고
1 층	1. 주조정실	- 방송신호 제어 및 프로그램 송출	74.2㎡ (22평)
	2. 장비실(rack실)	- 각종 방송장비 설치	36.1㎡ (11평)
	3. 1부조정실 (스튜디오 포함)	- 방송프로그램 생방송 제작	134.8㎡ (41평)
	4. 자료실	- 방송음반 및 각종자료 보관	33.0㎡ (10평)
	5. 편집실	- 취재 녹음물 편집 작업	27.9㎡ (8평)
	6. 작가실	- 방송 프로그램 원고 작성 업무	22.4㎡ (7평)
	7. 출연자대기실	- MC 및 출연자 방송대기	22.2㎡ (7평)
2 층	1. 편성제작국	- 방송 제작 지원업무, 사무공간	203.8㎡ (62평)
	2. 방송기술국	- 방송 기술지원업무, 사무공간	137.4㎡ (42평)
	3. 소회의실	- 방송업무 회의	66.2㎡ (20평)

II

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방송장비 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 간략 기술

1. 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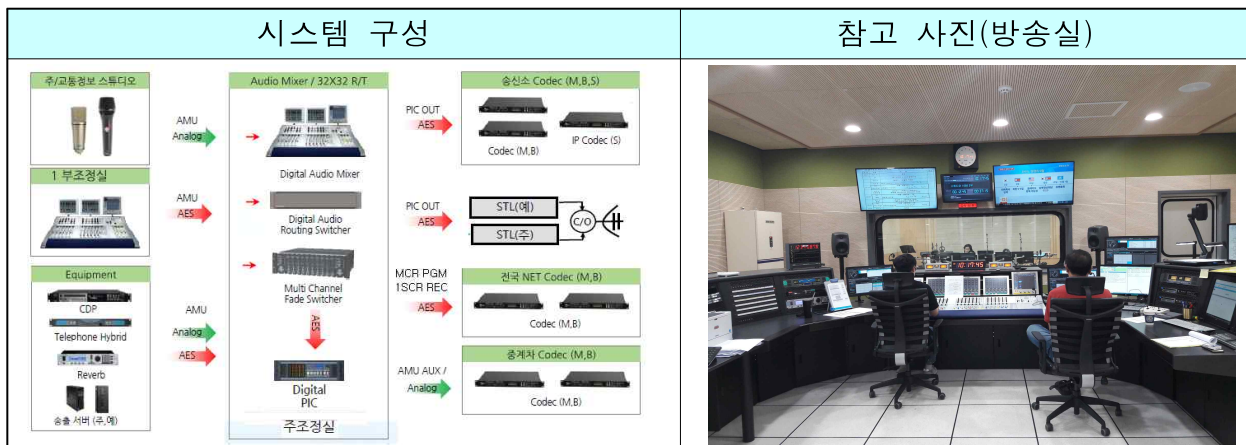
가. 연주소

방 송 시 설	용 도	장비내역
1. 라디오 방송실 - 주조정실 - 장비실(Rack) - 부조정실 (생방송, 녹음방송) - 편집실	◦ 방송 프로그램 송출 ◦ 프로그램 믹싱 및 송출조정 ◦ 생방송 제작 및 송출 (프로그램 및 교통정보 등) ◦ 녹음방송 제작 및 편집 ◦ 보이는 라디오 방송시스템 제작	- 디지털 음향콘솔 - 전송장비 (STL 및 네트워크) - 오디오파일 시스템 - 음향 및 영상장비 - 기타 장비

1) 디지털 라디오 방송제작·송출 시스템 구축

-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위한 풀 디지털 방송시스템 설계
- 안정적인 송출운영 환경을 위한 구축을 위한 주요장비 이중화
- 방송신호 공유 및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 연계를 통한 최적화 된 방송 인프라 구축
- 보이는 라디오 시스템 도입, 고화질 실시간 인터넷 라이브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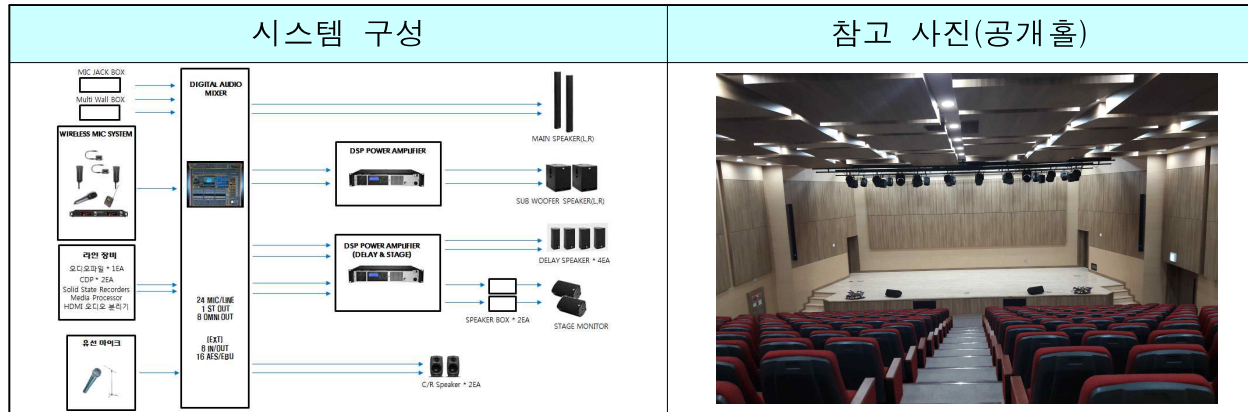
< 연주소 방송제작 및 송출시스템 및 참고 사진 >



3) 공개홀 방송시스템 구축

- 공개방송 제작을 위한 음향시스템 구축
- 빔 프로젝터, HDMI 스위처 설치 등 영상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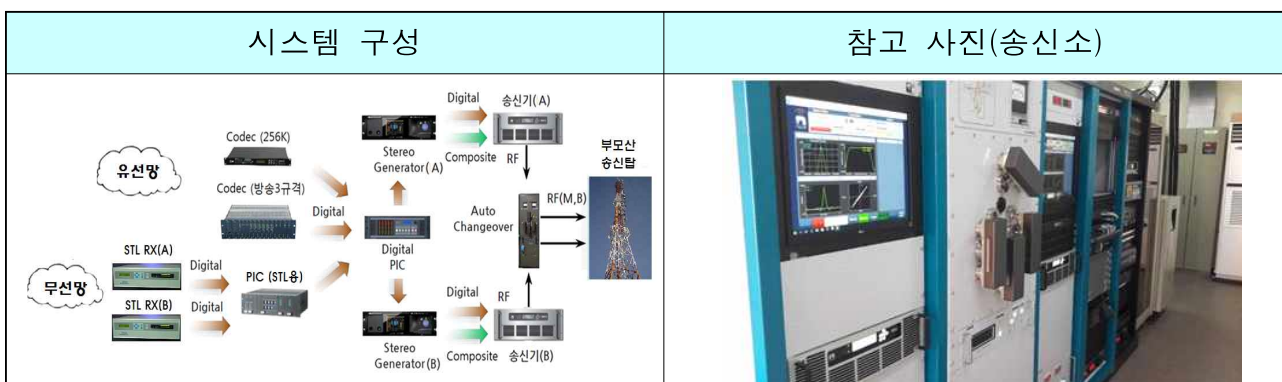
< 공개홀 음향시스템 구성 및 참고 사진 >



나. 송신소

주요시설	용도	장비내역
송신소	○ 방송신호 송출 ○ 방송신호 변조 ○ FM전파 송신	- 변, 복조기 - 송신기(2대) 주/예비 - 안테나 - 원격제어 감시시스템
	○ 방송기기 주 전원공급 - 예비 전원공급	- 전원시설(한전) - 발전기 - UPS(비상전원공급)

< 송신소 송출시스템 구성 및 참고 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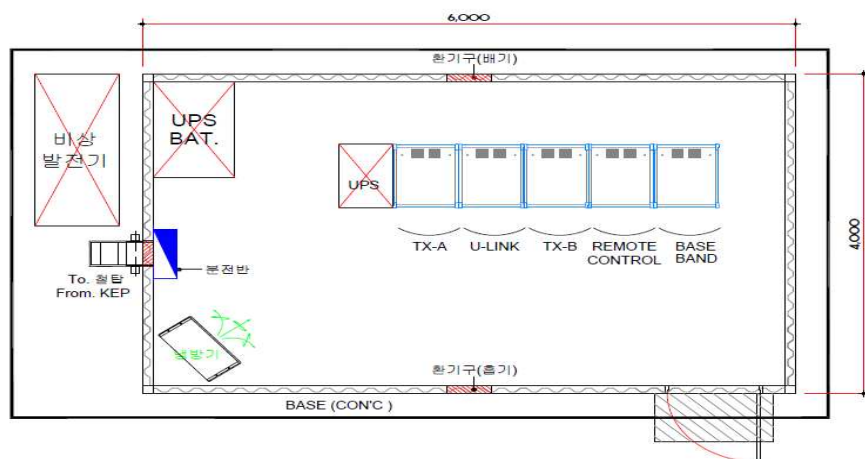
1) 송신소 위치

- 좌 표 : 동경 : 도 분 초, 북위 : 도 분 초
- 장 소 : : 00도 00시 00구 00동 00길 00번지 (건물명)

< 송신소 장소(건물내) 설치 예정 장소 >

송신소 설치 도면(건물의 및 건물내 위치) 작성

< 송신소 내 기기배치도 >



2) 공중선 시설

- 사용주파수 : 99.9MHz, 95.5MHz, 100.7MHz
- 송신방식 : 초단파방송 송신 표준방식(스테레오 포닉방송)
- 송신출력 : ?KW
- 가청예상거리 : 송신소반경 약 5Km
- 공중선 구성 : CP Dipole(Panel) 2단 2면
- 실효복사 전력 : ?W
- 안테나 주 복사각도 : 00도, 00도 방향

< 안테나(1판넬) 사양 > - 예시

형 별 (MODEL)	FM Crossbow Panel
주 파 수 (FREQUENCY RANGE)	99.9MHz, 95.5MHz, 100.7MHz
정 재 파 비 (V.S.W.R)	1.1 : 1 이하
이 득 (GAIN)	4.9dB
편 파 (POLARIZATION)	원형편파
임 피 단 스 (IMPEDANCE)	50 Ω
접 속 단 자 (INPUT FLANGE)	DIN 7/16 female or Φ7/8" EIA FLANGE
허 용 전 력 (POWER HANDING)	Panel당 5KW
풍 압 하 중 (WIND VELOCITY))	180km/h이상
1 판넬 크기 (1 PANEL SIZE)	2000×2000×700mm
안테나 중량 (ANTENNA WEIGHT)	98Kg

< FM 송신기 사양 > - 예시

Frequency Range	88 MHz ~ 108 MHz
RF Power Output	1,000 watts
RF Output Impedance	50Ω
Frequency Stability	± 250 Hz (0~50 °C)
Audio Input Impedance	50 KΩ bridging, balanced, or 600Ω
Audio Input Level	± 10dBm 75kHz deviation at 400Hz
Pre-emphasis	25, 50, 75 μs or Flat
Distortion(THD + Noise)	0.7% 이하 (at 15kHz)
Stereo Separation	40 dB 이상 (50Hz~15kHz)
Crosstalk	40 dB 이상
Stereo Pilot	19kHz (± 2kHz), 9% modulation
Subcarrier Suppression	50 dB 이하 ± 7kHz deviation
FM S/N Ratio	60 dB 이상
RF Bandwidth	± 120 kHz, 35dB 이상 ± 240 kHz, 45dB 이상
RF Spurious Products	70dB 이상
RF Connector	Φ7/8" EIA FLANGE, 50Ω
AC Power	180V~264V ; 50/60 Hz

2. 시설 투자계획

가. 장비의 도입 및 설치

- 1) 입찰방식 : 공개경쟁
- 2) 특수조건
 - 방송전원 : AC 380/220, 3상 또는 단상
 - 보증수리 : 설치 후 2년간 보증

나. 방송신호의 규격

- 1) 전파법 및 무선설비규칙 등 관계법령 준수
 - 방송 표준방식 및 방송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방송신호의 규격 > - 예시

구 분	내 용	비 고
1. 방송 주파수	초단파방송 : 99.9MHz, 95.5MHz, 100.7MHz	
2. 전파형식	260KF8EHF	
3. 음성주파수 특성	20 Hz - 15 KHz	
4. 음성신호 형식	STEREO	
5. 음성신호의 크기	Analog : +4dBm	
	Digital : -18dBfs	
6. 임피던스	Analog : 600 Ohm, Balanced	
	Digital : 110 Ohm, Balanced	

다. 주요 방송장비

1) 연주소 주요 장비

〈 연주소 주요 장비 〉

구 분	종	금액(천원)	비 고
계			
1. Network System			
2. Audio Mixer Unit			
3. Audio File System			
4. Audio Source System & Switcher			
5. Audio Distribution System			
6. Audio Monitoring System			
7. Mic/Speaker Equipment			
8. 컴퓨터 & Video Monitoring System			
9. Clock & Tel. Hybrid & Tally & OnAir 램프			
10. Desk & Rack			
11. Measuring Equipment			
12. Installation Equipment(공사비 포함)			

2 송신소 주요 장비

〈 송신소 주요 장비 〉

구 분	종	금액(천원)	비 고
계			
1. FM Transmitter System			
2. ACU & U-Link System			
3. Antenna System			
4. ANT Cable 및 Connectors			
5. Emergency 송출 System			
6. 원격제어(Remote) System			
7. LINK Equipment			
8. 구성 장비			
9. 기반 설비(공사비 포함)			

라. 방송장비의 보수 유지

○ 장비 보수요원 확보

- 보수책임자급 : 1명(경력 5년차)
- 보수요원 : 1명(경력 2년차)

○ 보수요원 교육

- 국내 교육
 - 한국전파진흥원 등에 위탁교육 실시
 - 방송장비 생산회사에 직원파견 교육 실시

마. 방송장비의 예산 확보

○ 연도별 예산확보

- 방송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

〈 연도별 방송장비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2	'23	비고
합 계			
1. 연주소방송장비			
2. 연주소 제작장비			
3. 송신소방송장비			

바. 방송사고 대책

1) 방송사고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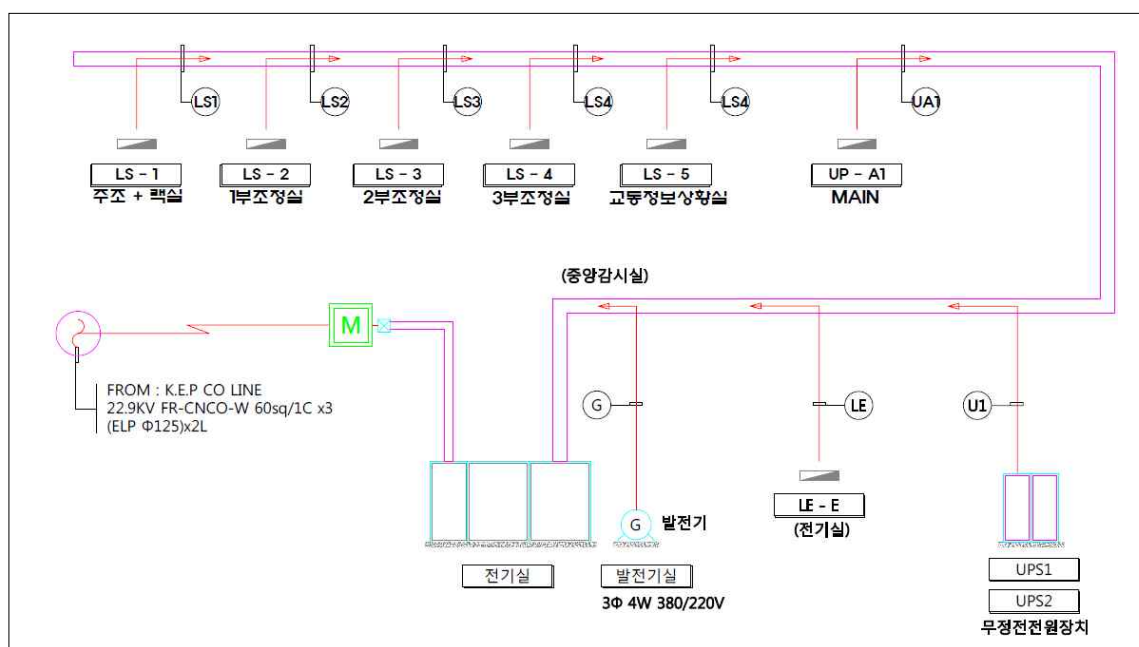
- 한국전력 측으로부터 예고 없는 정전으로 인한 사고
-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UPS) 고장으로 인한 사고
- 방송장비 고장으로 인한 사고
- 운용자의 주의력 집중부족으로 인한 사고

2) 방송사고 처리대책

- 한국전력측으로 부터의 사고
 - 1차 대책 :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운영
 - 2차 대책 : 상전을 비상발전기 전원으로 대체하여 무사고 방송운영
- 〈 연주소 및 송신소 전원설비 예정내역 〉

설치 장소	연주소		송신소	
	용량	출력전압	용량	출력전압
UPS	75KVA	380/220V	20KVA	220V
비상발전기	182kW	380/220V	40kW	380/220V

〈 연주소 전력간선 계통도 〉



-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고장으로 인한 사고
 - 대책 : By-Pass 스위치를 절체하여 정상 방송
- 방송장비 고장으로 인한 사고
 - 대책 : 주요 방송장비 2중 시스템으로 설치, 주요 수리부품 확보, 주기적 점검으로 사전예방 조치
- 운용자의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
 - 대책 : 방송사고 처리에 관한 교육, 주기적 실시

3) 방송장비의 전원 공급 시스템

가) 전원의 안정화

- 고가의 정밀한 방송장비는 대부분 “중앙전산처리(CPU)” 장치를 내장하고 있어 안정적인 전원공급 필요
- 전원 안정화 대책
 - 방송전용 비상발전기 설치
 - UPS 병렬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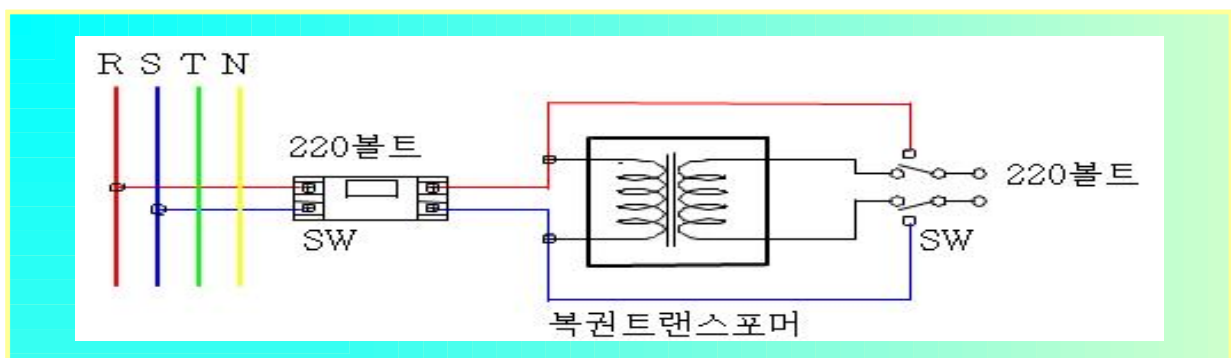
나) 전원공급 시스템

- 방송장비 전원 공급 방식 : 220 볼트 단상 공급

다) 방송장비의 접지 및 낙뢰보호기 설치

- 방송장비의 접지는 1종 접지에 연결
 - 전원접지와 분리 연결
- 방송전원 입력단, 낙뢰보호기 연결로 Surge 예방

〈 방송장비 전원공급 시스템 설계 〉



Ⅲ

사업구역도 및 시설 배치계획

1. 가청구역

- 일원 : 00시 00구
- 일부 : 00시 00구

가청구역의 일원과 일부는 “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82호)을 기준으로 작성

※ 일원 가구수내 가청 가구 비율 50% 이상
일부 가구수내 가청 가구 비율 20% ~ 50%

<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

방송국	방송구역전계강도(dB μ V/m)			비 고
	고잡음지역	중잡음지역	저잡음지역	
초 단 파 방송 을 하는 방송국	70	60	48	초단파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전계강도 측정은 지상 4m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별 잡음 등급 구분>

지 역	잡음등급	지 역	잡음등급
서울특별시	중잡음	창 원 시	중잡음
부산광역시	#	기 타 지 역	저잡음
대구광역시	#		

2. 사업구역도

사업구역도 작성

< 방송국 현황 >

구 분	내 용
주 파 수	
출 력	
송신소 위치	

3. 방송구역내 수신 예상 가구수

- 구역내 총가구수 :
- 수신 예상가구수 :

〈 방송구역내 수신 예상 가구수 〉

지 역	예상가구수	구역내가구수	비 고
00시, 00시 00구,	261,873	477,319	

NO	일원지역	면적(km²)	가구수	일부지역	면적(km²)	가구수
1	00시 구지역	940.80	346,000	00도 00구지역	520.27	44,649
2	00군 시지역	81.80	16,694	00군 00시지역	842.15	20,577
계	일원 전지역	94,161.8	362,694	일부 전지역	1,362.42	65,226

※ 출처 : 000도 홈페이지, 2017.12.31. 기준

※ 일원 가구수내 가청 가구 비율 50% 이상
일부 기구수내 기청 가구 비율 20% ~ 50%

< 참고 > 무선 종사자 배치 규정

※ 신청서 제출 시 무선종사자 채용 현황 및 자격증 사본 제출 필요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22)

구 분	자 격 별 정 원			
	무선설비기사 또는 방송통신 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방송통신산업 기사	무선설비기능사 또는 방송통신기능사	계
안테나공급전력 1.5킬로와트 이상	1명	1명	1명	3명
안테나공급전력 1.5킬로와트 미만 500와트 이상		1명	2명	3명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초과 500와트 미만			2명	2명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			1명	1명
연 주 소			2명	2명

비 고

1. 중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방송국 및 원격제어 등의 자동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송신소·중계소의 경우에는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